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021.11.25.~12.17.

---

#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보건소】

김 포 시



# 목 차

## ■ 보건 소

- ⊙ 보건행정과 ..... 3
- ⊙ 보건사업과 ..... 95
- ⊙ 북부보건과 ..... 221



---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보건행정과





# (청사 유지 관리) (P - 581~58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4개소(보건소, 보건지소6, 보건진료소7)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주기적인 청사시설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310,860</b>	<b>425,785</b>	<b>425,785</b>	<b>405,354</b>	<b>△20,431</b>		
국 비							
도 비							
시 비	310,860	425,785	425,785	405,354	△20,43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보건행정과 사무실 및 방역소독 사무실 냉난방기 신규 설치
- 통신실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 및 사고·화재 예방을 위한 예비용 냉방기 추가 설치
- 노후된 청소원 휴게실 냉장고 교체(2009년 구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건소, 보건지소(6개소)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 청사관리(보안경비, 승강기, 전기안전, 소방관리 등) 용역비
- 청사 운영비(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등 공공요금)
-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보건행정과 및 방역소독 사무실 냉난방기 신규 설치
- 통신실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 및 사고·화재 예방을 위한 예비용 냉방기 추가 설치
- 청소원 휴게실 노후 냉장고 교체로 현업 근로자 업무 환경 개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b>합 계</b>	<b>= 405,354</b>	
청사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청사 청소관리 인부임	= 93,773	107,214
		·기본급 86,880원*3명*247일	= 64,379	
		·유급휴일수당 81,880원*3명*67일	= 17,463	
		·명절휴가비 500,000원*3명*2회	= 3,000	
		·시간외근무수당 16,290원*14시간*3명*12월	= 8,211	
		·피복비 240,000원*3명	= 720	
		◎4대 보험료 93,773,000*13%	= 12,191	
		◎한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금 250,000원*5명	= 1,250	
청사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청사 사무관리	= 23,130	44,280
		·청사관리용 기자재 구입 1,000,000원*2회	= 2,000	
		·민원용 화장지 구입 400,000원*12월	= 4,800	
		·청사관리용 청소용품 및 세제 구입 400,000원*12월	= 4,800	
		·민원사무 환경정비용 물품 구입 800,000원*4회	= 3,200	
		·폐기물처리비 1,200,000원*1회	= 1,200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950,000원*7개소	= 6,650	
		·고속도로 통행료 40,000원*12월	= 480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80,000원*14개소*12월	= 13,440	
		◎민원실 사무관리	= 6,750	
		·민원양식 제작비 75원*50,000매	= 3,750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50,000원*12월	= 600	
		·제증명발급용 행정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 200,000원*12월	= 2,400	
		◎진료대기실 민원용 일간지 등 구입비 50,000원*12월	= 600	
◎농협은행자동화기기 설치임대료 부가가치세 160,000원	= 160			
◎구급차, 의료지원 의약품 및 소모품 200,000원	= 200			
201-02 공공운영비	◎청사건물, 시설물 유지관리 4,000,000원*12월	= 48,000	241,960	
		◎청사 수목전정 1,500,000원*2회		= 3,000
		◎청사 보일러 및 팬코일 관리 14,000,000원		= 14,000
		◎전자경비시스템 운영 800,000원*12월		= 9,600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300,000원*12월		= 3,600
		◎전기안전관리 대행 350,000원*12월		= 4,200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300,000원*12월		= 3,600
		◎청사 의무소독비 350,000원*12회		= 4,200
		◎저수조 청소비 700,000원*2회		= 1,400
		◎GHP 및 EHP 냉난방기 유지보수 12,000,000원		= 12,000
		◎시설물안전점검 실시비 1,500,000원*2회		= 3,000
		◎청사 공공운영비		= 106,560
		·전기요금 5,100,000원*12월		= 61,200
		·도시가스요금 2,200,000원*12월		= 26,400
		·상하수도 요금 1,300,000원*12월		= 15,600
		·통신요금 70,000원*12월		= 840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120,000원*11대		= 1,320
		·교통유발부담금 1,200,000원*1회		= 1,200
◎차량 유지관리비 200,000원*11대*12월	= 26,400			
◎공공우편물 발송비 200,000원*12월	= 2,400			
401-01 시설비	◎통신실 천장형 냉난방기 4,600,000원*1대	= 4,600	4,600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건행정과, 방역소독 사무실 냉난방기 3,000,000원*2대	= 6,000	7,300	
	◎통신실 벽걸이형 냉방기(예비용) 850,000원*1대	= 850		
	◎청소원 휴게실 냉장고 450,000원*1대	= 45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청사운영 용역계약 및 청사관리
- 2022.01.~2022.02. : 통신실 냉난방기 교체 및 냉방기 설치,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29,699천원(집행율 99.9%)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357,091원(집행율 99.6%) - 자산취득비(냉장고, 책상 등) : 7,860천원(집행율 100%)	
2020년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38,338천원(집행율 82.3%)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34,238천원(집행율 97.9%) - 자산취득비(민원접수대, 교육실 음향장비 등) : 25,005천원(집행율 99.6%)	
2021년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81,225천원(집행율 77%)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25,503천원(집행율 58.5%)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194,584천원(집행율 80.5%) - 자산취득비(신규 직원 책상·의자·사물함, 교육실 음향장비 등) : 33,503천원(집행율 95.4%)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96,010	394,650	-	1,360	
2020년	310,860	297,581	-	13,279	
2021년	425,785	334,814	-	90,97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민정	전화	5007
-----	-------	------------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P - 582~58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01. ~ 0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보건소 방사선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소 방사선실 내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증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210,000	210,000	
국 비					140,000	140,000	
도 비					35,000	35,000	
시 비					35,000	3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도 신규사업 신청에 따른 증액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장비교체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210,000,000원 * 1대 = 21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 입찰공고
- 2022.02. 계약 및 구입·설치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보건8급 강민영	전화	5008
-----	-------	------------	-----	----------	----	------

#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P - 58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시민건강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2,480</b>	<b>2,480</b>	<b>2,480</b>		<b>39,560</b>	<b>37,080</b>	
국 비							
도 비							
시 비	2,480	2,480	2,480		39,560	37,08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실시
-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책자 제작 및 위원 참석수당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근거내용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5.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뢰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및 위원 참석수당(위원회 2회 개최)
- ‘21년 시행결과 및 ‘22년 시행계획 심의, 제8기(‘23~‘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및 ‘23년 시행계획 심의
- 「지역보건법」 제7조 1항에 따른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2023~2026) 수립 연구용역 실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지역보건의료 계획 추진	201-02 사무관리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배부 10,000원*100권*2회 =	2,000	39,56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80,000원*16명*2회 =	2,560	
	207-01 연구용역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	35,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결과 및 2022년 시행계획 수립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1회)
- 2022.02. : 김포시의회 계획수립 보고 및 경기도 제출
- 2022.03.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단 구성
- 2022.05.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연구용역 입찰 및 선정, 계약
- 2022.06.~11.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활동
- 2022.12.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주민 공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2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의회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 -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 제작	
2020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 제작	
2021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 제작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00	1,050	-	150	
2020년	2,480	2,283	-	197	
2021년	2,480	1,228	-	1,25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간호6급 최보라	전화	5006
-----	-------	------------	-----	----------	----	------

# (구내식당 운영) (P - 58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보건소 본소 근무직원 14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내부 식당 운영으로 직원 복리후생 도모 및 질적 업무환경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50,604</b>	<b>50,604</b>	<b>36,981</b>	<b>13,623</b>	<b>56,740</b>	<b>6,136</b>	
국 비							
도 비							
시 비	50,604	50,604	36,981	13,623	56,740	6,13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 관리·유지보수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1
근거내용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구내식당 주방용품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적정 운용
  - ※ 2021년 구내식당 인력 운용 : 영양사(시간선택제임기제), 조리사(기간제 1명), 조리원(기간제 1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56,740	
구내식당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급식실 전담인력 인부임(조리사) = 25,333 ·기본급 10,860원*1명*7시간*247일 = 18,777 ·유급휴일수당 10,860원*1명*7시간*67일 = 5,094 ·명절휴가비 437,500원*1명*2회 = 875 ·시간외근무수당 16,290원*3시간*12월 = 587 ◎급식실 전담인력 인부임(조리원) = 21,799 ·기본급 10,860원*1명*6시간*247일 = 16,095 ·유급휴일수당 10,860원*1명*6시간*67일 = 4,366 ·명절휴가비 375,000원*1명*2회 = 751 ·시간외근무수당 16,290원*3시간*12월 = 587 ◎4대보험료 47,132,000원*13% = 6,128 ◎피복비 120,000원*2명*2회 = 480	53,740	
	201-01 사무관리비	◎ 급식실 유지보수비 3,000,000원 =	3,000	3,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 2022.12. : 식당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 구내식당 운영 : 2021.04~ - 시설현황 : 시설규모 202.5m <sup>2</sup> / 좌석수 64 - 인력현황 : 3명 (영양사1/조리사1/조리원1) - 일 식 수 : 140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50,604	38,068	-	12,53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가제급이자현	전화	4061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양촌읍 보건지소 운영		합 계 =	18,020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제증명 검사업무 대형 인건비 ·방사선실, 검사실 대체인력 100,000원*2명*15일 =	3,000	3,000
	201-01 사무관리비	◎행정·의료장비 유지보수비 500,000원 = ◎민원접수실 운영 =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40,000원*12월 = ·제증명 접수 서식 인쇄비 100원*3,500매*12회 = ◎검체 운송 수수료 27,500*8회*12월 =	500 4,680 480 4,200 2,640	7,820
	201-02 공공운영비	◎청소관리비(주2회) 600,000*12월 =	7,200	7,2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양촌읍보건지소 제증명 업무 및 민원실 운영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양촌읍보건지소 민원실 운영 실적 : 총20,843건 · 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검사 11,153건, 건강진단서 검사 560건, 발급 9,130건	
2020년	- 양촌읍보건지소 민원실 운영 실적 : 총27,733건 · 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검사 20,395건, 건강진단서 검사 189건, 발급 7,149건	
2021년	- 2020.12.17.부터 잠정 운영 중단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008	7,697	-	311	
2020년	7,528	5,520	-	2,008	
2021년	7,880	1,773		6,10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양촌지소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9급 양은지	전화	5490
-----	-------	------------	-----	------------	----	------

#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P - 58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2022.12.                      ○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외
- 사업대상 : 보건지소 6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44,688</b>	<b>37,630</b>	<b>67,290</b>	<b>△29,660</b>	<b>94,289</b>	<b>56,659</b>	
국 비							
도 비							
시 비	44,688	37,630	67,290	△29,660	94,289	56,65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양촌읍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2021년 미운영)
- 통진읍, 대곶면, 하성면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 관사 임대 추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제2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근거내용	<b>제24조(비용의 보조)</b>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b>제5조의2(공중보건 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b>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월곶면, 양촌읍 보건지소 처방에 따른 진료약품
- 검사시약 구입비 및 6개 보건지소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
- 통진읍, 대곶면, 하성면 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가 사용할 관사 제공(임대)
  - 통진읍행정복합청사 및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하성면복지문화센터 관사 사용 불가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합 계 =	94,289	
	201-01 사무관리비	◎공중보건의 관사 월세 (500,000원*12월*1개소)+(500,000원*9월*2개소) = ◎관사 중개수수료 243,000원*3개소 =	15,000 729	15,729
	307-01 의료 및 구료비	◎일반진료 의약품(월곶면) 80,000원*15종*12월 = ◎한방진료 의약품(양촌읍) 15,000원*21종*12월 = ◎검사 시약(양촌읍) 70,000원*32종*12월 = ◎X-ray 판독비 1,000원*50건*20회 = ◎진료기자재 500,000원*5회 =	14,400 3,780 26,880 1,000 2,500	48,560
	406-01 기타자본이전	◎공중보건의 관사 보증금 10,000,000원 * 3개소 =	30,000	30,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보건지소 6개소 및 검사실(양촌) 운영
- 2022.01~2022.12 : 대곶보건지소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2022.04~2022.12 : 통진, 하성보건지소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보건지소(6개소) 운영 : 진료실적 9,095건, 예방접종 실적 : 4,174건 - 검사실 운영(양촌) : 검사실적 24,876건	
2020년	- 보건지소(6개소) 운영 : 진료실적 1,619건, 예방접종 실적 : 185건 - 검사실 운영(양촌) : 검사실적 41,904건	
2021년	- 보건지소(6개소) 운영 : 진료실적 247건 - 검사실 운영(양촌) : 검사실적 없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5,400	52,628	-	2,772	
2020년	44,688	43,406	-	1,282	
2021년	37,630	23,104	-	14,52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민정	전화	5007
-----	-------	------------	-----	------------	----	------

#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P - 585~58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2022.12. ○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외
- 사업규모 : 보건진료소 7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203,606</b>	<b>205,562</b>	<b>197,202</b>	<b>8,360</b>	<b>200,210</b>	<b>Δ5,352</b>	
국 비							
도 비							
시 비	203,606	205,562	197,202	8,360	200,210	Δ5,35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보건진료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개 진료소 혈압기 노후로 인한 교체)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근거내용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7개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비
-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및 청사유지 용역비(전기, 상하수도요금, 보안경비)
- 내소 진료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기자재 구입
- 노후된 혈압계 교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	200,210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수리 450,000원*7개소 = 3,150 ◎수용비 500,000원*7개소 = 3,500 ◎보건진료소 운영 및 청소용품 등 구입 500,000원*7개소 = 3,500 ◎일차진료 관련 용지 제작 및 구입 50,000원*7개소*12월 = 4,200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95,000원*7개소*12월 = 7,980		22,330
	201-02 공공운영비	◎청사건물, 시설물 유지관리 3,000,000원*7개소 = 21,000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50,000원*7개소*12월 = 12,600 ◎청사 수목전정 400,000원*7개소 = 2,800 ◎청사 난방용 유류 구입 23,000,000원 = 23,000 ◎청사관리 용역 수수료 = 5,040 ·정화조 업무관리 대행 수수료 50,000원*7개소*12월 = 4,200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0,000원*7개소*2회 = 840 ◎청사 공공운영비 = 23,940 ·전기요금 200,000원*7개소*12월 = 16,800 ·상하수도 요금 30,000원*7개소*12월 = 2,520 ·통신(전화, 인터넷) 요금 55,000원*7개소*12월 = 4,620		88,380
	307-01 의료및구료비	◎일차진료 의약품 등 구입 = 87,000 ·학운리보건진료소 10,440,000원 = 10,440 ·대벽리보건진료소 13,920,000원 = 13,920 ·송마리보건진료소 13,050,000원 = 13,050 ·성동리보건진료소 7,830,000원 = 7,830 ·개곡리보건진료소 16,530,000원 = 16,530 ·마조리보건진료소 15,660,000원 = 15,660 ·석탄리보건진료소 9,570,000원 = 9,570		87,000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동식 혈압계(마조리) 250,000원*1개 = 250 ◎이동식 혈압계(송마리) 250,000원*1개 = 250 ◎대기실 전용 혈압계(석탄리) 2,000,000원*1대 = 2,000		2,5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청사관리 용역(경비, 정화조) 및 진료의약품 계약  
보건진료소 운영 및 월별집행
- 2022.01.~2022.02. : 이동식 혈압계 및 대기실 혈압계 구입·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무관리비(청사운영 소모품) : 29,250천원(집행율 84.6%)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51,417천원(집행율 90.1%) - 의료 및 구료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86,969천원(집행율 99.9%) - 자산취득비(에어컨, 냉장고) : 3,460천원(집행율 100%)	
2020년	- 사무관리비(청사운영 소모품) : 19,815천원(집행율 92.9%)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73,624천원(집행율 79.8%) - 의료 및 구료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86,983천원(집행율 99.9%) - 자산취득비(냉장고, 청소기) : 2,692천원(집행율 88.5%)	
2021년	- 사무관리비(청사운영 소모품) : 10,536천원(집행율 %)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58,880천원(집행율 %) - 의료 및 구료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57,680천원(집행율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475천원(집행율 95%)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82,074	171,096		10,978	
2020년	203,606	183,115		20,491	
2021년	205,562	127,570		77,99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민정 외 7	전화	5007
-----	-------	------------	-----	----------------	----	------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P - 58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2022.12. ○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외
- 사업규모 : 보건진료소 7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600	5,600	5,600		5,600	-	
국 비							
도 비							
시 비	5,600	5,600	5,600		5,600	-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근거내용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연 1회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	5,600	5,600
		·학운리보건진료소 80,000원*11명*1회 =	880	
		·대벽리보건진료소 80,000원*11명*1회 =	880	
		·송마리보건진료소 80,000원*15명*1회 =	1,200	
		·성동리보건진료소 80,000원*4명*1회 =	320	
		·개곡리보건진료소 80,000원*13명*1회 =	1,040	
		·마조리보건진료소 80,000원*11명*1회 =	880	
		·석탄리보건진료소 80,000원*5명*1회 =	4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2022.12. : 각 진료소별 운영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최 결과보고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연 2회/7개소	
2020년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연 1회/7개소	
2021년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연 1회/7개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600	5,440	-	160	
2020년	5,600	5,440	-	160	
2021년	5,600	880	-	4,72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보건진료7급 오유진외 6	전화	5493
-----	-------	------------	-----	---------------	----	------

# (의약업소 관리) (P - 58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의약관련업소(의료기관 517, 약업소 593, 의료기기 643, 안경업소 등 116)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업무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3,306</b>	<b>5,644</b>	<b>3,964</b>	<b>1,680</b>	<b>6,860</b>	<b>1,216</b>	
국 비							
도 비							
시 비	3,306	5,644	3,964	1,680	6,860	1,21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우편요금 증가 및 의약업소 관리기관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1항 제25조제3항, 제59조1항
근거내용	<p>제33조(개설등)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25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59조(지도와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 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약업소 지사안내사항 전달을 위한 우편물 발송비용 증가
- 병원급 개설허가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의약업소 관리		합 계 =	6,860	
	201-01 사무관리비	◎의약업소 신고증 인쇄 및 물품 구입 300,000원*3종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수당 80,000원*11명*2회 =	900 1,760	2,660
	201-02 공공운영비	◎의약업소 발송 우편요금 2,480원*250개소*6회 = ◎의약업소 지도단속용 휴대폰 요금 40,000원*1대*12월 =	3,720 480	4,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우편요금 및 사무관리용품 구입 1,899천원	
2020년	- 사무관리용품 구입 1,064천원 - 우편요금 및 휴대폰 요금 지급 1,120천원	
2021년	- 사무관리용품 구입 1,760천원 - 우편요금 및 휴대폰 요금 지급 2,116천원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개최 2회(서면심의) 540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557	2,553	-	4	
2020년	3,306	2,952	-	354	
2021년	5,644	4,416	-	1,228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7급 김기란	전화	5025
-----	-------	------------	-----	----------	----	------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P - 58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b>계</b>	<b>6,600</b>	<b>12,000</b>	<b>12,000</b>		<b>8,000</b>	<b>△4,000</b>	
국 비	3,300	6,000	6,000		4,000	△2,000	
도 비							
시 비	3,300	6,000	6,000		4,000	△2,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대면·비대면 복합 교육 진행하여 교육비 감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근거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심정지환자 발생 시 5분 이내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 및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한 법정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실시
- 일반 시민들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증가로 인하여 법정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일반 시민까지 교육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301-12 기타보상금	◎응급처치 교육 = 8,000 •비대면 20,000원*200명 = 4,000 •대면 400,000*10회 = 4,000	8,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2. : 김포교육지원청, 여성가족과, 읍·면·동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
- 2022.02.~2022.12. : 연중 신청·접수 및 교육 실시
- 2023.01. : 교육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내용 : 법정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실적 : 27회 1020명	
2020년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대면) · 내용 : 법정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실적 : 9회 330명	
2021년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대면) · 내용 : 법정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실적 : 23회 628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9,100	9,100	-	-	
2020년	6,600	6,600	-	-	
2021년	12,000	12,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5056
-----	-------	------------	-----	------------	----	------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P - 586~58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2.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	4,800	4,800		5,500	700	
국 비		2,400	2,400		2,750	350	
도 비							
시 비	-	2,400	2,400		2,750	3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인구증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확대
-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비의무 자율 설치기관의 응급장비 보급 확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1조
근거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대상 제외 시설 중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높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가능한 취약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결과에 따라 패드·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거나 실제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사용하였으나 예산 마련 등의 문제로 즉시 교체가 어려운 장비 정비에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 5,500 •자동심장충격기 2,450,000*2대 = 4,900 •패드·배터리 카트리지 200,000원*3개 = 600	5,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2.~2022.04. : 지원 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 2022.05.~2022.12. : 자동심장충격기 및 패드·배터리 보급
- 2022.01.~2022.12.31.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 내용 :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비의무 자율 설치기관의 응급장비 보급 지원 · 실적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 2대 (종합사회복지관 1대, 김포시청 1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지원 - 1개 (중봉도서관 1개)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4,800	4,8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5056
-----	-------	------------	-----	------------	----	------

#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P - 58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재난 등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의료지원 체계 확립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2,000	2,000	2,000		2,000		
국 비	1,400	1,400	1,400		1,400		
도 비	600	600	600		600		
시 비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 1,3,7의2호
근거내용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과의 장의 재난예방조치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재난대비 비축 의료물품·의료장비 확보를 위한 재난대응
- 현장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구성인력에 대한 재난의료 전문교육 훈련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2,00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재난대비 물품 구비 = 1,160	
		•재난용 응급 물품, 사무용품 등 ◎재난훈련 교육비 210,000원*4명 = 8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재난대비 응급물품 구입
- 2022.03.~2022.07. : 추진계획수립
- 2022.06.~2022.07. : 2021년도 재난현장 매뉴얼 정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 2022.08.~ 2022.12. : 재난의료대비대응과정 전문교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재난 및 응급의료 위한 응급의료용품(채혈백) 구입 : 7개/300천원 - 재난의료 대응대비 교육훈련 : 2명/420천원 - 중증도 분류표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보온담요 등 구입 : 1,279천원	
2020년	- 재난의료 물품구입 · 야외용 매트 : 20개/700천원 · 신속대응 상황판 및 핫팩 구입 : 1,300천원	
2021년	- 재난의료 물품구입 : 1,853천원 · 재난응급용 가방, 의료용 산소공급기 등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00	2,000	0	0	
2020년	2,000	2,000	0	0	
2021년	2,000	1,853	0	14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7급 김기란	전화	5025
-----	-------	------------	-----	----------	----	------

#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P - 58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감암로 7
- 사업규모 : 1개소(한사랑약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심야시간(22시~익일1시)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9,000	34,500	34,500		34,500		
국 비							
도 비	20,700	10,350	10,350		10,350		
시 비	48,300	24,150	24,150		24,1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서 1개소 운영으로 지원비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근거내용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심야시간 대 복약지도가 있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경비 지속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34,500
공공심야약국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공공심야약국 홍보물 제작 1,100원*1,500개	= 1,650
	301-12 기타보상금	◎공공심야약국 운영경비지원 30,000원*3시간*365일*1개소	= 32,8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공공심야약국 운영 계획수립
- 2022.01.~12. : 공공심야약국 월별 운영비 지원
- 2022.12. : 공공심야약국 운영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운영기관 : 2개소(한사랑약국, 통진온누리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총 2,202건(한사랑약국 1,646건, 통진온누리약국 556건)	
2020년	- 운영기관 : 2개소(한사랑약국, 통진온누리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총 2,078건(한사랑약국 1,458건, 통진온누리약국 620건)	
2021년	- 운영기관 : 1개소(한사랑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1,891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9,000	69,000	-	-	
2020년	69,000	69,000	-	-	
2021년	34,500	26,220	-	8,28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b>위치도</b>	<b>현장사진</b>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보건8급 최은빈	전화	5026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기본추진계획 수립
- 2022.02.~2022.03. : 방문복약지도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및 선정
- 2022.04.~2022.11. : 방문복약지도 서비스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시
- 2022.12. : 대상자 만족도 및 사업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방문복약지도 · 내용 : 다제약물 복용자 50명 대상으로 한달간격 총 3회 복약지도 · 실적 : 1차 60명, 2차 57명, 3차 55명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 내용 :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등 교육 · 실적 : 경로당 16회 253명 - 의약품 안전사용 전문약사 양성 : 95명 이수/ 방문복약지도 전문약사 양성 : 30명 이수	
2020년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물 : 3,140천원 - 방문복약지도 : 12,880천원	
2021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홍보물 : 5,090천원 ※ 방문복약지도 기타보상금 11월 중 집행예정 : 14,910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000	20,000	-	-	
2020년	20,000	16,020		3,980	
2021년	20,000	5,090		14,91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보건8급 최은빈	전화	5026
-----	-------	------------	-----	----------	----	------

# (응급의료 관리) (P - 58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18대 (보건소 5, 보건지소 6, 보건진료소 7)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3,410</b>	-	-	-	<b>29,865</b>	<b>29,865</b>	
국 비							
도 비							
시 비	3,410	-	-	-	29,865	29,86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시기 도래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7조의2 제1항 제6조
근거내용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조례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교체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적정사용 가능하도록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응급의료 관리		합 계	= 29,865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자동심장충격기 1,991,000*15대	= 29,86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교체
- 2022.01.~2022.12. : 연중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교육용 장비(인체모형, AED) 대여: 5회	
2020년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패드, 배터리) 교체: 17대(일체형카트리지 16개, 패드 1개)	
2021년	- 해당사항없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3,410	3,410	-	-	
2021년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5056
-----	-------	------------	-----	------------	----	------

# (헌혈장려 및 지원) (P - 58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관내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	-	5,000	5,000	
국 비							
도 비							
시 비	-	-	-	-	5,000	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헌혈장려 지원조례 제정
- 혈액 수급 부족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헌혈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김포시민의 헌혈 독려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제2항 제3조
근거내용	<p>제2조의3(헌혈의 권장)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헌혈 권장 홍보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로 혈액 수급에 대한 필요성 인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의약업소 관리		합 계	= 5,000	
	201-01 사무관리비	◎헌혈홍보 현수막 등 제작 50,000원*20개	= 1,000	
		◎헌혈장려 홍보물 등 제작 4,000원*1,000개	= 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헌혈장려 계획수립
- 2022.01. ~ 2022.12. : 헌혈장려사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해당사항없음	
2020년	- 김포시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2020.09.29)	
2021년	- 헌혈장려 홍보 (홈페이지, 전광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보건8급 최은빈	전화	5026
-----	-------	------------	-----	----------	----	------

# (국가암 관리사업 추진) (P - 58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50%, 의료급여수급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 무료검진 홍보로 수검률 향상 및 치료율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1,850	25,500	25,500	26,260	760		
국 비							
도 비							
시 비	21,850	25,500	25,500	26,260	7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가 암검진 대상자 증가로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구입비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근거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 대상 암검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및 배너 홍보
-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배부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국가 암관리 사업추진		합 계 = 26,260	
	201-01 사무관리비	◎암관리사업 추진 홍보 = 7,660 ·대장암검진 채변통 구입 150원*45,000개 = 6,750 ·홍보배너 및 현수막 70,000원*13개 = 910	7,660
	201-02 공공운영비	◎검진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620원*30,000매 = 18,600	18,6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추진계획수립
- 2022.04.~2022.09.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
- 2022.03.~2022.12. : 읍·면·동, 공공기관 보관함, 홍보 활동 시 채변통 배부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활용 암검진 수검독려 전화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 : 29,722명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40,995명 - 채변통 배부: 29,900개	
2020년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 : 30,162 명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40,154명 - 채변통 배부: 25,200개	
2021년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24,941명, 문자발송: 7,037명 - 채변통 배부 : 20,723개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626	20,626	-	0	
2020년	21,850	21,850	-	0	
2021년	25,500	18,410	-	7,09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강순미	담당자	진료검진팀장 강순미	전화	5040
-----	-------	------------	-----	------------	----	------

# (국가암 관리[암검진사업]) (P - 588~58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50%, 의료급여수급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을 통하여 조기 암 발견 및 치료율 향상과 사망률 감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40,000	522,200	522,200		482,720	△39,480	
국 비	320,000	261,100	261,100		241,360	△19,740	
도 비	48,000	39,165	39,165		36,200	△2,965	
시 비	272,000	221,935	221,935		205,160	△16,77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국가암검진비 국도비 지원 축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11조
근거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검진비 지급(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b>합 계</b>	<b>= 482,720</b>
국가 암관리 (암검진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 인건비 2명	= 26,477
		· 기본급 54,300원*166일*2명	= 18,028
		· 유급휴일수당 54,300원*44주*2명	= 4,778
		· 명절휴가비 312,500원*1회*2명	= 625
		· 4대 보험료 23,431,000원*13%	= 3,046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 암검진비	= 456,243
			456,24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추진계획수립
- 2022.04. :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 2022.03.~2022.12. : 저소득층 암검진 대상자 수검독려 전화 및 암검진사업 홍보
- 2022.01.~2022.12. : 국가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409,131,000원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40,995명 암검진 수검실적 : 83,191건	
2020년	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617,852,000원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40,154명 암검진 수검실적 : 94,937건	
2021년	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496,282,000원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24,941명 암검진 수검실적 : 79,653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09,131	409,131	0	0	
2020년	617,852	617,852	0	0	
2021년	522,200	517,869	0	4,33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강순미	담당자	진료검진팀장 강순미	전화	5040
-----	-------	------------	-----	------------	----	------

# (암환자 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 (P - 58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에 5대암 진단자), 폐암환자(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의료수급자, 소아암환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암환자 가정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61,000	580,000	580,000		573,800	△6,200	
국 비	180,500	290,000	290,000			△290,000	
도 비	27,075	43,500	43,500		329,900	286,400	
시 비	153,425	246,500	246,500		243,900	△2,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건강보험가입자 중 21년 7월 이후 5대암 검진 후 진단 및 폐암 진단 받은 신규 암환자 지원 중단으로 감액 내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13조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에 5대암 확진 받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암확진 의료 급여수급자, 폐암환자, 18세미만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573,8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추진계획수립
- 2022.01.~2022.12. : 암환자의료비 신청 접수, 소아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 2022.01.~2022.1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의료비 중복지원 여부 확인
- 2022.01.~2022.12. : 암환자의료비 지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암환자의료비 지원 : 267명 466,274,000원 건강보험(5대암종) 151명 177,329,370원, 의료급여수급자 47명 42,961,250원, 폐암 50명 65,938,650원 소아암 19명 180,044,730원	
2020년	암환자의료비 지원 : 236명 361,000,000원 건강보험(5대암종) 135명 163,951,540원, 의료급여수급자 40명 36,038,310원, 폐암 50명 69,768,800원 소아암 11명 91,241,350원	
2021년	암환자의료비 지원 : 280명 430,377,900원 건강보험(5대암종) 161명 192,884,580원, 의료급여수급자 42명 50,921,720원, 폐암 59명 90,130,740원 소아암 18명 96,440,86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66,274	466,274	0	0	
2020년	361,000	361,000	0	0	
2021년	580,000	430,378	0	149,62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강순미	담당자	보건9급 강이랑	전화	5041
-----	-------	------------	-----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P - 58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만성신부전 투석, 혈우병, 근육병 등 1,110개 질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792,000</b>	<b>720,000</b>	<b>720,000</b>		<b>770,000</b>	<b>50,000</b>	
국 비	396,000	360,000	360,000		385,000	25,000	
도 비							
시 비	396,000	360,000	360,000		385,000	2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희귀질환자 의료비 국비 지원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만성신부전 투석, 혈우병, 근육병 등 1,110개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77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추진계획수립
- 2022.01.~2022.1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신청 접수
- 2022.06.~2022.12.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실시(상반기, 하반기)
- 2022.01.~2022.1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분기별 예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134명 565,098,100원	
2020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141명 545,142,629원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143명 564,046,71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50,000	550,000	0	0	
2020년	792,000	792,000	0	0	
2021년	720,000	564,047	0	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강순미	담당자	보건9급 강이랑	전화	5041
-----	-------	------------	-----	----------	----	------

# (진료사업 운영) (P - 589~59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대상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소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내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증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26,182</b>	<b>23,236</b>	<b>29,636</b>	<b>△6,400</b>	<b>23,420</b>	<b>184</b>	
국 비							
도 비							
시 비	26,182	23,236	29,636	△6,400	23,420	18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진료사업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
근거내용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가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장비 운용에 따른 장비유지 및 보수비
- 내소 진료환자를 위한 기자재, 의약품구입
-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위한 방사선 선량측정기 판독료 및 민원인용 검진가운 구입
- 만성통증질환자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교실 운영 시 필요한 기자재 구입
-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진료실 담당자의 교육, 휴가 업무공백 시 전문적인 대체인력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b>합 계</b> = <b>23,420</b>	
진료사업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진료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진료실 · 물리치료실 · 방사선실 대체인력 100,000원*3명*20일 = 6,000	6,000
	201-01 사무관리비	◎방사선실 운영 = <b>716</b> ·방사선 선량측정기 판독료 16,500원*2개소*4회 = 132 ·방사선실 검진가운 70,000원*4벌 = 280 ·방사선실 공기청정기 필터 152,000원*2개 = 304 ◎물리치료실 운영 = <b>1,860</b> ·물리치료 장비 유지비 150,000원*10종 = 1,500 ·물리치료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30,000원*1대*12월 = 360 ◎진료사업 소모품 구입 100,000원 = <b>100</b>	2,676
	201-02 공공운영비	◎의료영상저장 전송장치 유지보수비 396,000원*2개소*12월 = 9,504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유지보수비 1,100,000원*2회 = 2,200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방화벽 유지보수비 660,000원*2회 = 1,320	13,024
	307-01 의료 및 구료비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 150,000원*10종 = 1,500 ◎진료실 기자재 구입 20,000*8종 = 160 ◎진료실 의약품 구입 20,000*3종 = 60	1,72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추진계획수립
- 2022.01.~2022.12. :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업무대행  
주 2회 요통교실 및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의 날 운영  
의료영상 저장 전송장치 유지보수(분기별)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방화벽 유지보수(반기별)
- 2022.03 :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
- 2022.04 : 진료실 기자재 및 의약품 구입
- 2022.11. : 방사선실 공기필터 교체
- 2022.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진료실적 16,440건, 물리치료 4,106명, 흉부 방사선 촬영 33,341건, 업무대행 42회 -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36,543건 -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 98회 641명 - 요통재활치료 : 98회 575명	
2020년	- 진료실적 7,990건, 물리치료 1,008명, 흉부 방사선 촬영 6,346건, 업무대행 2회 -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9,217건 -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 10회 54명 - 요통재활치료 : 10회 66명	
2021년	- 진료실적 5,096건, 물리치료 0명, 흉부 방사선 촬영 417건, 업무대행 7회 -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839건 -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 0명 - 요통재활치료 : 0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0,852	111,630	-	9,222	
2020년	26,182	23,149	-	3,033	
2021년	23,236	14,259	-	8,97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강순미	담당자	의료기술투8급 김재영 보건진료8급 이명주 의료기술투9급 이지혜	전화	5045 5050 5051
-----	-------	------------	-----	--	----	----------------------

# (일반건강검진 지원) (P - 59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일반건강검진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만66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37,995	40,700	40,700	40,300	△400		
국 비	30,396	32,560	32,560	32,240	△320		
도 비	1,140	1,221	1,221	1,209	△12		
시 비	6,459	6,919	6,919	6,851	△6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예산액 감액내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14조
근거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 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검진비 지급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일반검진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 40,3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추진계획수립
- 2022.03.~2022.07. :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 일반검진 안내문 발송
- 2022.01.~2022.12. : 일반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
- 2022.03.~2022.12. : 일반검진 수검독려 전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비 공단에 예탁 : 45,198,000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전화 독려 : 1,501명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564건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비 공단에 예탁 : 37,995,000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전화 독려 : 1,498명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326건	
2021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비 공단에 예탁 : 40,700,000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전화 독려 : 1,488명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470건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PHIS)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5,198	45,198	0	0	
2020년	37,995	37,995	0	0	
2021년	40,700	40,700	0	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강순미	담당자	보건6급 강순미	전화	5040
-----	-------	------------	-----	----------	----	------

# (민원실 운영) (P - 59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3.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관내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무원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26,921</b>				<b>26,386</b>	<b>26,386</b>	
국 비							
도 비							
시 비	26,921				26,386	26,38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공무원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무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
근거내용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민원실 공무원근로자의 육아휴직 예정(2022.03.~2022.12.)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공백 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민원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합 계 = 26,386	
		◎민원실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10개월) = 23,350	26,386
		·기본급 86,880원*1명*209일 = 18,158	
		·유급휴일수당 86,880원*1명*54일 = 4,692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1회 = 500	
		◎4대보험료 23,350,000원*13% = 3,03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2.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 2022.03. ~ 2022.12. : 민원실 업무 수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민원실 공무원근로자 육아휴직(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2020년	민원실 공무원근로자 육아휴직(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	
2021년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4,037	13,673	-	364	
2020년	31,821	31,146	-	675	
2021년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보건9급 이나영	전화	5011
-----	-------	------------	-----	----------	----	------

# (감염병 예방활동) (P - 59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감염병 조기감지 및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2,855	4,760	4,760	80,608	75,848		
국 비							
도 비							
시 비	12,855	4,760	4,760	80,608	75,84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단지 및 홍보물 제작
- 감염병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4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11호
근거내용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단지 및 홍보물 제작
- 감염병 대비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 거리두기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증가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감염병 예방활동		합 계 =	80,608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감염병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7개월) =	64,555	72,948
		· 기본급 86,880원*4명*145일 =	50,391	
		· 유급휴일수당 86,880원*4명*7일 =	2,433	
		· 시간외근무수당 16,290원*2시간*4명*56일 =	7,298	
		· 연차유급휴가수당 86,880원*4명*7월 =	2,433	
		· 명절휴가비 500,000원*4명*1회 =	2,000	
	◎ 4대보험료 64,555,000원*13% =	8,393		
201-01 사무관리비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전단지,물티슈 등) 1,000원*5,000개 =	5,000	5,000	
201-02 공공운영비	◎감염병 예방 휴대폰 요금 55,000원*1대*12월 =	660	2,160	
	◎감염병 예방 홍보용 우편요금 500원*3,000통 =	1,500		
301-12 기타보상금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강사비 250,000원*2회 =	500	500	

##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 : 2022년 감염병 예방 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22.01. : 2022년 감염병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2022.04.~2022.12. :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지정 및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감염병 홍보용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전단지 2회, 배너 및 현수막 제작 등) - 감염병예방관리 전담모니터요원 교육(2회)	
2020년	- 감염병 홍보용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현수막, 보관용 상자, 서식용지 제작 등) - 올바른 손씻기 조기교육 사업추진용 홍보물 구입(손소독제, 살균소독수) - 선별진료소 및 검사실 소모물품(난방 등유 등 구입) - 코로나19 역학조사 3,124건	
2021년	- 감염병 홍보용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검체채취 교육 강사비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045	6,914	-	131	
2020년	12,855	10,116	-	2,739	
2021년	4,760	1,733	-	3,02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7급 김정은 간호7급 배미란 간호8급 김희환	전화	5080 5036 2387

# (표본감시운영경비) (P - 59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4개소(해맑은비뇨기과의원, 아이민산부인과의원, 봄소아청소년과의원, 민홍기안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주요감염병 발생추이 관찰, 유행확인 및 감시로 효율적인 운영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880	5,880	5,880		5,880		
국 비	2,940	2,940	2,940		2,940		
도 비	882	882	882		882		
시 비	2,058	2,058	2,058		2,058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근거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주요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병,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안과감염병,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등)의 발생 문제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발생 추이 관찰을 위하여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운영비 지급
- 집단발생 유행을 확인하고 홍보 및 교육하여 감염병을 예방관리 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표본감시운영경비	301-12 기타보상비	◎수족구·인플루엔자 감시운영경비 120,000원*12개월*1개소 = 1,440 ◎인플루엔자실험실감시운영경비140,000원*12개월*1개소 = 1,680 ◎급성설사질환 감시운영경비 140,000원*12개월*1개소 = 1,680 ◎성매개감염병 감시운영경비 30,000원*12개월*2개소 = 720 ◎안과감염병 감시운영경비 30,000원*12개월*1개소 = 360	5,8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2022.03.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운영경비 지급

-2022.01.~2022.12.: 주요감염병표본감시기관 매주 화요일 질병관리본부 웹(<https://is.cdc.go.kr>)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안과감염병 129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 63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인플루엔자 1,082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1,777명 표본감시 보고	
2020년	- 안과감염병 54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 52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인플루엔자 153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1,078명 표본감시 보고	
2021년	- 안과감염병 25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 35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인플루엔자 7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1,107명 표본감시 보고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880	5,880	-	-	4개소
2020년	5,880	5,880	-	-	4개소
2021년	5,880	5,880	-	-	4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백서운	전화	4915
-----	-------	-------------	-----	----------	----	------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P - 591~5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2개소(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0,000	20,000	20,000		20,000		
국 비	20,000	20,000	20,000		20,000		
도 비							
시 비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근거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에 대한 표본감시 활동 및 예방관리 참여병원 운영비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의료기관 :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0,000,000원*2개소 = 20,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2022.03. : 표본감시기관 신청서 제출
  - 2022.03.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 제출
  - 2022.04. :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급
  - 2022.12.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25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53회/2,135건	
2020년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11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52회/ 1,878건	
2021년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13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42회/1,741건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4,000	14,000	-	-	2개소
2020년	14,000	14,000	-	-	2개소
2021년	20,000	20,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 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백서윤	전화	4915
-----	-------	--------------	-----	----------	----	------

# (검사실 운영관리) (P - 5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1.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지역주민, 김포시 주소지를 둔 예비부부·신혼부부, 임산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1. 감염병질환 진단 및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2. 준비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감염성질환을 조기진단하고 예방가능한 질환의 사전관리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230,470</b>	<b>177,783</b>	<b>207,788</b>	<b>△30,005</b>	<b>76,730</b>	<b>△101,053</b>	
국 비							
도 비							
시 비	230,470	177,783	207,788	△30,005	76,730	△101,05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0 ~ 21년 검사 장비 노후화로 인해 교체. 22년 장비 구매 계획 없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 5항
근거내용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근거내용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감염병 등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임상검사 진단시약 구입
- 건강관리 홍보물 및 안내문 서식 제작비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검사실 운영관리		합 계 =	76,730	
	201-01 사무관리비	◎검사실 운영 =	9,200	17,880
		·검사장비 유지비 450,000원*12월 =	5,400	
		·폐수처리 수수료 2,000,000원*1회 =	2,000	
		·감염성질환 검체 운송 수수료 45,000원*40회 =	1,800	
		◎예비부부·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운영 =	8,680	
		·안내문 서식 제작 : 200,000원*2회 =	400	
	307-01 의료및구료비	·홍보물 구입 : 5,900원*1,200개 =	7,080	58,850
		·민원인용 종이가방 구입 : 600,000원*2회 =	1,200	
		◎검사실 운영 =	29,600	
·검사용소모품 20,000원*40종*10회 =		8,000		
·세균검사시약 60,000원*45종*6회 =	16,200			
·기타검사시약 100,000원*18종*3회 =	5,400			
◎예비부부·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운영 =	29,250			
·면역검사용시약 : 170,000원*15종*5회 =	12,750			
·생화학검사용시약 : 110,000원*30종*5회 =	16,500			

##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 : 감염병진단검사 및 건강관리사업 계획수립
- 2022.01.~2022.12. : 검사실 운영 및 건강관리 검사
- 2022.02. : 건강관리 홍보물 제작 및 사업 홍보
- 2022.12. : 결과보고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건강진단결과서 : 28,786건 - 건강진단서 : 1,107건 - 기타임상검사 : 88,304건	
2020년	- 건강진단결과서 : 318건 - 건강진단서 : 4,687건 - 기타임상검사 : 48,780건 -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 793명	
2021년	- 기타임상검사 : 43,734건 -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 820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8,627	78,624		2,630	
2020년	230,470	218,189		12,281	
2021년	177,783	164,115		13,668	10.31일 기준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장미경	담당자	의료기술8급 조선진 의료기술9급 이인주 의료기술9급 권다인	전화	5052 5424 5039

# 공수병 예방사업 (P - 5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교상환자 발생 시 백신 비용 지원에 의한 신속한 대처로 공수병환자 발생예방
- 예산요구 현황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00	1,000	1,000		1,000		
국 비							
도 비	200	200	200		200		
시 비	800	800	800		80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근거내용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시 백신비 지원으로 공수병 환자 발생 방지
- 해당 동물이 광견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 및 도주 한 경우 공수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 비용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수병 예방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	○공수병 교상환자 백신비 지원 500,000원*2명 = 1,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광견병 감염 의심 동물로부터 교상된 경우 백신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교상환자 백신비 지원 : 1명	
2020년	- 교상환자 백신비 지원 : 2명	
2021년	- 지원실적 없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500	344		1,156	
2020년	1,000	189		811	
2021년	1,000	0		1,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장미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장미경	전화	5035
-----	-------	-------------	-----	------------	----	------

#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P - 592~5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8. ~ 2022.10.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물테러대비 초동대응 요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3,000	△3,000	3,000	3,000	
국 비	-	-	1,500	△1,500	1,500	1,500	
도 비	-	-	450	△450	450	450	
시 비	-	-	1,050	△1,050	1,050	1,0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격년제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1년 코로나19로 미실시에 따라 2022년도 예산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5호
근거내용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생물테러 대비 체계적인 대응 교육 및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공조 체계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생물 테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합 계 = 3,000	
	201-01 사무관리비	◎모의훈련대원 매식비 및 간식비 = 1,500	1,500
	201-03 행사운영비	◎모의훈련장 현수막 제작 90,000원*10종 = 900 ◎모의훈련장 물품(텐트, 책상, 의자 등) 임대 = 600	1,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8. : 기본계획수립
- 2022.09. : 모의훈련 1차 사전회의
- 2022.09. : 초동대응요원(민·관·군경) 교육
- 2022.10. : 모의훈련 2차 사전회의 및 현장 사전연습
- 2022.10. : 민·관·군경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격년제 실시	
2020년	- 미실시	코로나19로 미실시
2021년	- 미실시	코로나19로 미실시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코로나19로 미실시
2021년	-	-	-	-	코로나19로 미실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이순연	담당자	보건7급 이명옥	전화	4914
-----	-------	-------------	-----	----------	----	------

#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P - 5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3. ~ 2022.04.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물테러감염병의 전파 특성, 대응 장소에 따라 권장하는 보호장비 확보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조기 차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	-	-	-	<b>3,200</b>	<b>3,200</b>	
국 비	-	-	-	-	1,600	1,600	
도 비	-	-	-	-	-	-	
시 비	-	-	-	-	1,600	1,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생물테러감염병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LEVEL A) 구매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4호
근거내용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보호장비 내구연한이 도래
- 생물테러감염병 발생 대비 장비 확보로 초동대응 요원 위험 노출 차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430-01 자산및물품취득비	합 계 = 3,200	
		◎레벨A 보호복 구입 1,600,000원*2벌 = 3,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구매계획
- 2022.04 :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이순연	담당자	보건7급 이명옥	전화	4914
-----	-------	-------------	-----	----------	----	------

#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 (P - 593~59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감염병 조기감지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1,703,854	1,186,060	517,794	2,197,040	493,186	
국 비							
도 비							
시 비	-	1,703,854	1,186,060	517,794	2,197,040	493,186	
기 타							예비비제외

## □ 예산 증감사유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경비
- 확진자(격리자) 긴급이송 및 전원에 필요한 민간 운영 구급대 이용 수수료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종감염병 지속적 발생 및 증가에 따라 유증상자·자가격리자 관리,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등
-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경비
- 신종감염병 감염대책반(환자관리반, 자가격리반, 콜센터) 운영 경비
- 코로나19 검체채취 및 방역에 따른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발생
- 신종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병상 이송을 위하여 보건소 구급대 및 119 구급대 부족 시를 대비한 민간운영 구급대 이용 수수료
-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전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b>합 계</b> = <b>2,197,040</b>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부임(8개월) = <b>368,487</b>	554,675
		·기본급 86,880원*15명*164일 = 213,725	
		·유급휴일수당 86,880원*15명*45일 = 58,644	
		·시간외근무수당(주중) 16,290원*2시간*15명*20주 = 9,774	
		·시간외근무수당(주말) 16,290원*8시간*15명*35주 = 68,418	
		·연차유급휴가수당 86,880원*15명*8월 = 10,426	
		·명절휴가비 500,000원*15명*1회 = 7,500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368,487,000원*13% = <b>47,904</b>	
		◎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전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8개월) = <b>122,375</b>	
		·기본급 86,880원*6명*164일 = 85,490	
·유급휴일수당 86,880원*6명*45일 = 23,458			
·시간외근무수당 16,290원*8시간*6명*8월 = 6,256			
·연차유급휴가수당 86,880원*6명*8월 = 4,171			
·명절휴가비 500,000원*6명*1회 = 3,000			
◎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전달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122,375,000원*13% = <b>15,909</b>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	201-01 사무관리비	◎ 신종 감염병 대응(자가격리용) 물품 등 구입 = <b>99,000</b>	518,640
		·마스크 500원*10매*12,000개 = 60,000	
		·배부용 체온계 220원*10매*12,000개 = 26,400	
		·안내문 제작 120원*5종*12,000개 = 7,200	
		·폐기물 봉투 제작 450원*12,000개 = 5,400	
		◎ 신종 감염병 예방 물품 등 구입 = <b>75,600</b>	
		·마스크 500원*50,000개 = 25,000	
		·종이가방 3,800원*12,000매 = 45,600	
		·홍보용 현수막 소모품 등 100,000원*50개 = 5,000	
		◎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 <b>73,200</b>	
·방역 물품(5종)구입 10,000원*2,400개 = 24,000			
·소모성 물품 구입(입소자, 청소) 8,500원*2,400개 = 20,400			
·임시생활시설 근무자 급식비 8,000원*10명*30일*12월 = 28,800			
◎ 신종 감염병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 <b>90,840</b>			
·보건소 발생 의료폐기물 13,000원(박스/63L)*390박스*12월 = 60,840			
·확진자 의료폐기물 방문 수거처리 30,000원(통/20L)*1,000명 = 30,000			
◎ 코로나19 확진환자(격리자) 긴급이송 수수료 200,000원*500회 = <b>100,000</b>			
◎ 신종 감염병 대응 비상근무자 급식비 8,000원*625명*12월 = <b>60,000</b>			
◎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전달 차량 임차료 1,250,000원*2대*8월 = <b>20,000</b>			
200-206 재료비	◎ 신종 감염병 홍보 예방 및 자가격리용 분무형 살균 소독제 4,500원*18,000개 = 81,000	139,725	
	◎ 신종 감염병 홍보 예방 및 자가격리용 손소독제 4,500원*12,000개 = 54,000		
	◎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살균 소독제 17,500원*270개 = 4,725		
301-12 기타보상금	◎ 신종 감염병 대응 자가격리자 지원 구호물품 구입 70,000원*12,000개 = 840,000	840,000	
307-01 의료 및 구료비	◎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급식비 8,000원*50명*30일*12월 = 144,000	144,000	

**□ 사업 추진계획**

○ 신종감염병 긴급대응 필수물품 비축 계획

- 2022.01.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등 계약·구입 비축,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2.02. : 신종 감염병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 2022.01.~2022.12. :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체제 상시 운영
- 2022.01.~2022.12. : 선별진료소 운영 발생 의료폐기물 및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의료폐기물 방문수거 추진
- 2022.01.~2022.12. : 코로나19 확진환자(격리자) 긴급이송-민간운영 구급대 이용(보건소 구급대 및 119구급대 부족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 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 459명 - 자가격리자 : 10,578명(확진자 밀접접촉자/3,977명, 해외입국자/6,601명) -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39실) : 426명 - 의료폐기물 : 일반폐기물 1,806건, 격리폐기물 46건	
2021년	-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 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 2,951명 - 자가격리자 : 20,180명(확진자 밀접접촉자/14,181명, 해외입국자/5,999명) - 격리면제자 : 3,548명(능동감시/1,643명, 수동감시/1,905명) -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39실) : 328명 - 자가치료자 : 373명(재택치료/310명, 7(입소)+3일(격리)/63명) - 의료폐기물 : 일반폐기물 3,403건, 격리폐기물 933건 - 민간사설구급대 긴급이용 : 497회(80,940,340원)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 9명('21.3.~10.)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2,496,576 (예비비 872,722)	1,638,423	-	858,153	10.31기준 집행현황 (예비비 포함)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장 이순연 감염병관리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7급 이명옥 보건7급 김정민	전화	4914 5080
-----	-------	----------------------------	-----	----------------------	----	--------------

# (선별진료소 운영) (P - 594~59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141,080</b>	<b>208,480</b>	<b>△67,400</b>	<b>137,942</b>	<b>△3,138</b>	
국 비							
도 비							
시 비		141,080	208,480	△67,400	137,942	△3,13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중앙 코로나19 물품지원 수급 원활로 인해 비축물자 확보되어 선별진료소 물품 구입 예산액 감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2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질병관리청에서 배부하는 비축물자 및 검체 운송 수수료비
- 겨울철 선별진료소 운영 시 난방비 필요
- 선별진료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 : 전신보호복, 손소독제, 검체장갑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선별진료소 운영		합 계 =	137,942	
	201-01 사무관리비	◎선별진료소운영관리 소모품 2,000,000원*12개월 = ◎코로나19관련 물품 및 검체 운송 수수료 264,000원*12개월 =	24,000 3,168	27,168
	201-02 공공운영비	◎선별진료소 난방비 550,000원*6개월 =	3,300	3,300
	206-01 재료비	◎신종감염병 검체채취용 소모품 = ·살균스프레이 4,300원*200개*12개월 = ·손소독제 3,850원* 150개*12개월 = ·제균티슈 8,800원*40개*12개월 = ·선별진료소 채취장갑 3,000,000원*12개월 = ◎레벨D 보호복 세트 25,000원*2,000개 =	57,474 10,320 6,930 4,224 36,000 50,000	107,474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선별진료소 검사건수 : 41,114건	
2021년	선별진료소 검사건수 : 284,830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
2020년	-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응 재료비 사용
2021년	141,080	137,642		3,437	10.31일 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장미경	담당자	의료기술9급 이지혜 의료기술9급 권다인	전화	5051 5424
-----	-------	-------------	-----	--------------------------	----	--------------

# (취약지역 방역소독) (P - 595~59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 사업대상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742,464</b>	<b>639,077</b>	<b>639,077</b>		<b>579,191</b>	<b>△59,886</b>	
국 비							
도 비							
시 비	742,464	639,077	639,077		579,191	△59,88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취약지역 방역소독 재료비(약품구입비)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근거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도시 개발에 따른 나대지, 유수지, 물웅덩이 등 위생해충 서식지 증가로 방역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말라리아 등 각종 매개체감염성 질환에 대한 적극 방역필요
- 해충 발생이 많은 하절기 집중방역을 위한 16개 권역 민간위탁용역 방역소독비
- 기간제근로자 1명을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로 편성하여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 실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b>합 계</b> = <b>579,191</b>	
취약지역 방역소독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취약지역 방역소독 인부임 = <b>22,412</b> ·기본급 86,880원*1명*166일 = 14,423 ·유급휴일수당 86,880원*1명*44일 = 3,823 ·시간외근무수당 16,290원*1명*45시간*5월 = 3,666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1회 = 500 ◎4대보험료 22,412,000원*13% = <b>2,914</b> ◎방역소독요원 피복비 140,000원*1명 = <b>140</b>	25,466
	201-01 사무관리비	◎방역소독용 장비유지 및 소모품 구입 (휴대용연막기 100대, 차량용연막기 13대, 동력분무기 3대 등) = 6,500 ◎방역소독 근무자 급식비 8,000원*6명*90일 = 4,320 ◎해충기피제함 임대 및 관리비 385,000원*15대 = 5,775 ◎DMS 소모품 교체 및 정비 693,000원*12대 = 8,316	24,911
	201-02 공공운영비	◎보건소 방역소독용 유류비 150,000원*12개월*6대 = <b>10,800</b> ◎방역용 휴대폰 요금 43,000원*8월*6대 = <b>2,064</b> ◎방역차량 감시용 GPS 통신 유지비 100,500원*6월*21대 = <b>12,663</b>	25,527
	206-02 재료비	◎방역소독용 약품 구입 = <b>100,000</b> ·살충제 30,000원*1,000ℓ = 30,000 ·유충구제제 35,000원*2,000kg = 70,000	100,000
	307-05 민간위탁금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위탁 방역소독 ·분무소독 265,320원*95일*16권역 = 403,287	403,287

##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계획 수립
- 2022.01.~2022.04 : 취약지역 해빙기 방역소독
- 2022.03. : 기간제근로자 인력채용(1명)
- 2022.04.~2022.05. : 민간위탁 방역소독 용역 계약
- 2022.05.~2022.10. : 하절기 주·야간 집중 방역소독, 민간위탁 방역소독
- 2022.11.~2022.12. : 취약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절기 방역소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발대식 개최</li> <li>- 해방기방역, 하절기 집중방역, 동절기 방역 등 적기 실시</li> <li>- 드론방역소독 실시 :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 자격증 취득으로 직접 방제 실시(12회)</li> <li>-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실시 : 1,264건</li> <li>-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600건</li> <li>- 해충퇴치기 50대 추가설치(총 230대), 기피제함 6대 추가설치(총 15대)</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시 말라리아퇴치사업단 회의 개최 :1회</li> <li>- 해방기방역, 하절기 집중방역, 동절기 방역 등 적기 실시</li> <li>-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실시 : 1,347건</li> <li>-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520건</li> <li>- 해충퇴치기 260대, 기피제함15대 관리</li> </ul>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시 말라리아퇴치 합동방역 :6회</li> <li>- 해방기방역, 하절기 집중방역, 동절기 방역 등 적기 실시</li> <li>-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실시 : 1,365건</li> <li>-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504건</li> <li>- 해충퇴치기 260대, 기피제함15대 관리</li> </ul>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80,917	635,906	-	45,011	
2020년	742,464	691,772	-	50,692	
2021년	639,077	572,037	-	67,04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6급 함문선	전화	5037
-----	-------	-------------	-----	----------	----	------

# (말라리아 박멸사업) (P - 59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3. ~ 2022.11.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효율적, 능동적 방제활동으로 말라리아 환자 확산 방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207,000</b>	<b>207,000</b>	<b>207,000</b>		<b>207,000</b>		
국 비							
도 비	41,400	41,400	41,400		41,400		
시 비	165,600	165,600	165,600		165,60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근거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방치된 나대지, 유수지, 휴경지 등 모기 서식처 증가 및 기후환경 변화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 위생해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역소독 강화 및 확대 필요
- 인구증가에 따른 방역요청 민원 증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등 신속한 민원처리 및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말라리아 박멸사업		<b>합 계</b> = <b>207,000</b>	
	101-04 인건비	◎말라리아박멸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b>153,567</b> •기본급 86,880원*6명*166일 = 86,532 •유급휴일수당 86,880원*6명*44일 = 22,936 •시간외수당 16,290원*45시간*6명*5월 = 21,992 •명절휴가비 500,000원 * 6명 * 1회 = 3,000 •피복비 240,000원*6명*1회 = 1,440 •4대보험료 135,900,300원 * 13% = 17,667	153,567
	206-01 재료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 51,032,660원 = 51,033	51,033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방역소독 업무추진 간담회 8,000원 *20명*15회 = 2,400	2,4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년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03. : 기간제근로자 인력채용(6명)
- 2022.04.~2022.10. : 말라리아 방역소독사업 집행
- 2022.11.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6명 - 방역발대식 개최, 방역반 교육, 간담회 실시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성충구제 , -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 살충제, 유충구제제, 기피제 등 -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 16개소	
2020년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6명 - 김포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구성 및 개최(1회), 방역반 교육, 간담회 실시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성충구제 -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 살충제, 유충구제제, 기피제 등 -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 26개소	
2021년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6명 - 김포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비대면) 구성 및 개최(1회), 방역반 교육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성충구제 -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 살충제, 유충구제제, 기피제 등 -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 16개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30,000	228,772		1,228	
2020년	207,000	186,942		1,882	
2021년	207,000	190,776		16,22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6급 함문선	전화	5037
-----	-------	-------------	-----	----------	----	------

# (말라리아 퇴치사업) (P - 596~59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3. ~ 2022.11.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집중관리를 통한 말라리아 환자 감소 및 퇴치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41,040	141,040	141,040		141,040		
국 비	70,520	70,520	70,520		70,520		
도 비							
시 비	70,520	70,520	70,520		70,52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근거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말라리아 환자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말라리아 환자 확산 방지와 조기 퇴치를 위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합 계 = 141,040	
	101-04 인건비	◎말라리아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51,189 •기본급 86,880원*2명*166일 = 28,844 •유급휴일수당 86,880원*2명*44일 = 7,645 •시간외수당 16,290원*45시간*2명*5월 = 7,331 •명절휴가비 500,000원*2명*1회 = 1,000 •피복비 240,000원*2명*1회 = 480 •4대보험료 45,300,000원*13% = 5,889	51,189
	201-01 사무관리비	◎말라리아 예방 기피제 등 홍보물구입 = 30,000	30,000
	206-01 재료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 = 44,851 ◎말라리아 진단시약 및 소모품 등 구입 = 3,000	47,851
	405-01 자산취득비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 20대*600,000원 = 12,000	12,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03. : 기간제근로자 인력채용(2명)
- 2022.04.~2022.10. : 말라리아 퇴치사업 수행 및 집행
- 2022.11.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명 - 말라리아 예방 기피제 등 홍보물품 구입 - 말라리아 신속진단 키트 구입 및 관내 의료기관 배부 : 71개소 - 말라리아 치료제 및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2020년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명 - 말라리아 예방 기피제 등 홍보물품 구입 - 말라리아 신속진단 키트 구입 및 관내 의료기관 배부: 16개소 - 말라리아 치료제 및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2021년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명 -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용품 구입 - 말라리아 예방 기피제구입,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 - 말라리아 예방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0,520	68,708		1,812	
2020년	141,040	134,867		6,172	
2021년	141,040	114,101		26,939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6급 함문선	전화	5037
-----	-------	-------------	-----	----------	----	------

#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P - 59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3. ~ 2022.11.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군부대 및 마을단위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하고 활동하도록 지원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사업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5,000	45,000	45,000		45,000		
국 비							
도 비	9,000	9,000	9,000		9,000		
시 비	36,000	36,000	36,000		36,00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근거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DMZ, 군부대 인근 지역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소독용 약품, 장비 지원으로 능동적인 방역활동 추진
- 군부대 및 민간인 방역지원을 통한 자율방역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206-01 재료비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 45,000	4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민간자율방역실시 계획서 수립
- 2022.04.~2022.10. : 사업 수행 및 집행
- 2022.11.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도 건강증진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민간자율방역 : 16개반 /148회 - 휴대용연막기 대여 : 100대 - 방역장비 및 방역약품 지원	
2020년	- 민간자율방역 : 258회 - 휴대용연막기 대여 : 76대 - 방역장비 및 방역약품 지원	
2021년	- 민간자율방역 : 325회 - 휴대용연막기 대여 : 100대 - 방역장비 및 방역약품 지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5,000	44,984		16	
2020년	45,000	44,977		23	
2021년	45,000	44,996		4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6급 함문선	전화	5037
-----	-------	-------------	-----	----------	----	------

# (신종감염병 방역소독) (P - 597~5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1. ~ 2022.12. ○ 위 치 : 김포시
- 사업대상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종감염병 긴급 방역소독으로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442,994</b>	<b>442,994</b>		<b>471,087</b>	<b>28,093</b>	
국 비							
도 비							
시 비		442,994	442,994		471,087	28,093	
기 타							예비비제외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독 대상 시설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근거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소독
- 확진자 가옥 등 감염전파력이 높은 신종감염증 방역 시 숙련된 전문 방역 인력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신종감염병 방역소독		합 계	= 471,087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긴급방역소독 인부임	= 89,207	116,863
		·기본급 86,880원*3명*164일	= 42,745	
		·유급휴일수당 86,880원*3명*45일	= 11,729	
		·시간외근무수당 16,290원*3명*45시간*8월	= 17,594	
		·시간외근무수당(주말) 16,290원*3명*40시간*8월	= 15,639	
		·명절휴가비 500,000원*3명*1회	= 1,500	
		◎4대보험료 89,207,000원*13%	= 11,597	
		◎방역소독요원 피복비 140,000원*3명	= 420	
		◎말라리아인력 시간외근무수당(주말) 16,290*4명*30시간*8월	= 15,639	
	201-01 사무관리비	◎ 민간소독 방역비 100,000원*3,000회	= 300,000	314,224
		◎ 긴급방역소독요원 급식비 8,000원*11명*48회	= 4,224	
		◎ 방역소독 차량 임차료 1,250,000원*1대*8월	= 10,000	
206-02 재료비	◎ 살균소독제 10,000원*3,000통	= 30,000	40,000	
	◎ 방역 보호복 10,000원*1,000개	= 10,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신종감염병 방역소독 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기간제근로자 인력채용(3명)
- 2022.01.~2022.12. : 신종감염병 방역소독 사업 추진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코로나19 방역 인력 채용: 3명(5개월) - 확진자 가옥 및 접촉시설, 고위험시설 방역소독: 1,430건 - 공공시설(김포도시철도, 도서관 등) 자동분사 손소독기 설치 : 23대 - 방역 소독용 장비구입 : 2종 28대	
2021년	- 코로나19 방역 인력 채용: 3명(8개월) - 확진자 가옥 및 접촉시설, 고위험시설 방역소독: 4,179건 - 방역 소독용 장비구입 : 1종 6대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	-	-	-	
2021년	516,244	399,510	-	116,734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예비비 포함)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6급 함문선	전화	5037
-----	-------	-------------	-----	----------	----	------

# (보건소결핵관리사업) (P - 598~59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4,75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높은 발생 및 사망률과 막대한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결핵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176,823</b>	<b>173,133</b>	<b>172,993</b>	<b>140</b>	<b>191,296</b>	<b>18,163</b>	
국 비	88,412	86,566	86,496	70	95,648	9,082	
도 비	26,523	25,970	25,949	21	28,694	2,724	
시 비	61,888	60,597	60,548	49	66,954	6,35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8~2020년 결핵환자 발생 비율에 따른 시군별 차등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제27조
근거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지원□	보조지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결핵환자 및 고위험군(비순응,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꾸준한 관리로 치료 성공률 제고
- 가족 접촉자 조사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강화로 추가 결핵환자 발견 및 전파 차단
- 결핵발병위험 높은 노인대상 검진을 강화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b>합 계</b> =	<b>191,296</b>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명 ·기본급 86,880원*2명*230일 = 39,965 ·유급휴일수당 86,880원*2명*67일 = 11,642 ·명절휴가비 500,000원*2명*2회 = 2,000 ·정액급식비 130,000원*2명*12월 = 3,120 ·교육비, 여비, 기타수당 등 20,000원*2명*12월 = 480 ◎4대보험료 57,206,720원*13% = 7,436	64,643
	201-01 사무관리비	◎결핵사업 홍보 및 역학조사 수행 = 10,000	10,000
	202-01 국내여비	◎결핵역학조사 및 교육 여비 = 500	500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2명*1,858,000원 = 3,716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150건*37,773원 = 5,666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비 1,884건*34,200원 = 64,433 ◎결핵환자 가족검진 198명*48,818원 = 9,666 ◎노인결핵검진 2,522명*12,630원 = 31,852	115,333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바코드 라벨 프린터 550,000*1대 = 550 ◎약포장기 270,000*1대 = 270	82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02. : 결핵관리사업 추진계획수립
- 2022.01.~2022.12. : 사업집행
- 2022.12.~2023.01. : 결과보고 및 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결핵등록관리: 209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177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27개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2건(6,829천원) -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1,957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1,244건	
2020년	- 결핵등록관리: 196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202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40개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2건(3,046천원) -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2,128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489건	
2021년	- 결핵등록관리: 150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133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30개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3건(979천원) -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1,404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565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3,113	98,036	-	5,077	
2020년	176,823	161,118	-	15,705	
2021년	173,133	104,443	-	68,690	10.31. 기준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7급 조항미	전화	5038
-----	-------	-------------	-----	----------	----	------

# (의료기관환자관리사업) (P - 59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70,658	71,300	71,300		72,298	998	
국 비	70,658	71,300	71,300		72,298	998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제27조
근거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관리 질을 높여 결핵 치료 성공률 향상, 다제내성 환자 발생 감소, 결핵으로 인한 사망 감소를 위함.
- 관내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배치(2개소) : 김포우리병원(2015년), 뉴고려병원(2019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의료기관 환자 관리사업	301-11 기타보상금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 36,149,000원*2개소 = 72,29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의료기관(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2022년 사업계획서 제출
- 2022.01.~2022.02. : 의료기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2022.01.~2022.12. :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사업 업무 수행 및 운영비 집행
- 2023.01.~2023.02. : 2022년 최종보고서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김포우리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86%,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1.49%, 환자 치료성공률 95%, 접촉자 검진율 95.45%	
2020년	- 김포우리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2%, 환자 치료성공률 95%,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93.75%, 접촉자 검진율 100%	
2021년	- 김포우리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98%,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98%, 접촉자 검진율 100%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8,740	68,740	0	0	
2020년	70,658	70,658	0	0	
2021년	71,300	71,300	0	0	10.31.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7급 조황미	전화	5038
-----	-------	-------------	-----	----------	----	------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P - 59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한센인피해사건(단종,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080	4,080	4,080		4,080		
국 비	4,080	4,080	4,080		4,080		
도 비							
시 비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근거내용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 : 2명(「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 사업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에서 1인당 연간 2,040천원(170천원/월) 지급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인피해사건 지급대상자 지원비 170,000원*12월*2명 = 4,0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한센인피해사건 지급대상자 위로지원금 지급
- 2023.01.~2023.02. : 2022년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총 2명(12회)	
2020년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총 2명(12회)	
2021년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총 2명(10회)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600	3,600	-	0	
2020년	4,080	4,080	-	0	
2021년	4,080	3,400	-	680	10.31.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7급 조황미	전화	5038
-----	-------	-------------	-----	----------	----	------

# (한센인 의료지원 및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P - 599~60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203명(의료비지원 3명, 피부병검진 2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한센피부병의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 및 의료비지원으로 한센인 부담 경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2,398</b>	<b>3,100</b>			<b>3,100</b>		
국 비							
도 비	480	620			620		
시 비	1,918	2,480			2,48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호
근거내용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회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한센인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근로능력부족 및 열악한 경제사정 등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 지원이 필요함
- 한센병 신환자 등의 발견을 위한 이동 피부검진사업 실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한센인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한센인 의료비 지원(3명)	= 1,500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8,000원*200명	= 1,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1.~2021.12. : 한센피부병 이동진료 계획 수립
- 2022.01.~2022.12. : 이동진료 실시
- 2022.06. : 상반기 한센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
- 2022.12. : 하반기 한센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
- 2023.01. : 2022년 사업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1명(41건) -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 218건	
2020년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3명(37건) -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 205건	
2021년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3명(52건) -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 202건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100	2,100	-	0	
2020년	2,398	2,398	-	0	
2021년	3,100	1,299	-	1,801	10.31.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7급 조황미	전화	5038
-----	-------	-------------	-----	----------	----	------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P - 60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3,291명(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130명, 에이즈검사 1,366건, 성매개감염병 검진 1,795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에이즈·성매개감염병 검사를 통한 전파 방지 및 HIV감염인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108,024</b>	<b>149,656</b>	<b>149,656</b>		<b>169,064</b>	<b>19,408</b>	
국 비	54,012	74,828	74,828		84,532	9,704	
도 비							
시 비	54,012	74,828	74,828		84,532	9,70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1인 평균 진료비 및 HIV 감염 등록자 수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
근거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통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307-01 의료및구료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1,263,440원*130명	=	164,248	169,064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3,000원*1,366건	=	4,098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400원*1,795건	=	71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신고 및 환자관리, 역학조사
- 2022.01.~2022.12.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 2022.01.~2022.12. :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HIV 감염인 등록관리 : 113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453건(84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2,620건, 에이즈 2,037건	
2020년	- HIV 감염인 등록관리 : 129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544건(93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954건, 에이즈 868건	
2021년	- HIV 감염인 등록관리 : 143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603건(107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820건, 에이즈 853건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4,700	84,693	0	7	
2020년	108,024	108,005	0	19	
2021년	149,656	123,973	0	25,683	10.31.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감염병관리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7급 조황미 의료기술8급 조선진	전화	5038 5052
-----	-------	----------------------------	-----	------------------------	----	--------------



---

#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보건사업과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P - 60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603명(등록인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715,986	722,820	722,820	-	208,638	△ 514,183	
국 비	91,625	92,521	92,521		26,706	△ 64,919	
도 비	93,807	94,689	94,689		27,332	△ 67,357	
시 비	530,554	535,610	535,610		154,600	△ 381,01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5763(2021.10.18.)호와 관련 2022년 정신건강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로 감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5조, 제82조 - 제6조
근거내용	<p><b>【법률】</b></p> <p><b>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b>제82조(보조금 등)</b>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b>【조례】</b></p> <p><b>제6조(운영비 지원)</b>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 예산요구 필요 사유

-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 등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 중점 추진사항(사업내용)

- 주간재활프로그램 : 주 4일 운영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직업재활프로그램 : 주 5일 운영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
- 사례관리 : 등록자 대상 가정방문, 내소 상담 등 정기적 사례관리 제공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 계 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b>만성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b>	
		· 프로그램운영비 : 3,000원*30명*384회	= 34,560
		· 외부활동비 : 20,000원*30명*12회	= 7,200
		· 동아리강사비 : 50,000원*4명*24회	= 4,800
		· 프로그램 강사비 : 40,000원*6명*24회	= 5,760
		· 재가회원프로그램 I, II : 5,000원*20명*48회	= 4,800
		· 가족교육 : 100,000원*12회	= 1,200
		· 사례관리물품구입 : 2,000원*200개*12회	= 4,800
		· 회원및가족간담회 : 30,000원*223명	= 6,690
		<b>소계</b>	<b>= 69,810</b>
		<b>정신건강증진사업</b>	
		· 자원봉사관리 : 200,000원*2회	= 400
		· 캠페인 진행 : 50,000원*10회	= 500
· 음악제 참가비 : 1,500,000원*1회	= 1,500		
· 센터 리플릿 제작 : 1,000원*22,369부	= 22,369		
· 센터 홍보물 제작 : 2,000원*12,504개	= 25,008		
<b>소계</b>	<b>= 49,777</b>		
<b>직업재활사업비</b>			
· 업무도우미 지원 : 100,000원*3명*12월	= 3,600		
· 보호작업장 운영비 : 1,500원*6명*250회	= 2,250		
· 취업자 자조모임비 : 20,000원*10명*4회	= 800		
<b>소계</b>	<b>= 6,650</b>		
<b>업무추진비</b>			
· 운영 회의비 : 400,000원*5회	= 2,000		
· 유관기관 간담회 : 300,000원*4회	= 1,200		
· 유관기관방문비 : 30,000원*10회	= 300		
<b>소계</b>	<b>= 3,500</b>		
<b>자살예방사업</b>			
· 자살예방홍보물 : 3,000원*5종*4,000개	<b>60,000</b>		
<b>직원능력개발비</b>			
· 직원교육참가비 : 80,000원*24명	= 1,920		
· 직원워크샵비 : 3,240,000원*2회	= 6,480		
<b>소계</b>	<b>= 68,400</b>		
<b>일반운영비</b>			
· 공공요금비 : 600,000원*12월	= 7,200		
· 수용비 및 수수료 : 200,000원*12월	= 2,400		
· 소프트웨어구입 : 500,000원*1회	= 500		
· 재정보험가입비용 : 401,000원*1회	= 401		
<b>소계</b>	<b>= 10,501</b>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추진
- 2022.02. ~ 12.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2022.03. ~ 12.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2022.12.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및 가족교육	3,929명(연인원) 7,460명(연인원)	
2020년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및 가족교육	3,154명(연인원) 7,757명(연인원)	
2021년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및 가족교육	3,953명(연인원) 8,787명(연인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49,000	849,000	-	-	
2020년	715,986	715,986	-	-	
2021년	722,820	722,82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6급 박임순	전화	5027
-----	-------	------------	-----	------------	----	------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P - 60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98명(자살고위험군 등록인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위기 개입 등을 통한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0,720	40,720	40,720	-	40,720	-	
국 비	20,360	20,360	20,360		20,360		
도 비							
시 비	20,360	20,360	20,360		20,36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근거내용	<p><b>【법률】</b>  <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8.&gt;</p> <p><b>【조례】</b>  <b>제12조(예산의 지원)</b>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 사유
  - 사례관리, 교육, 선별검사, 위기개입 등 자살예방사업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 필요
- 중점 추진사항(사업내용)
  - 자살고위험군 발견 및 등록, 사례관리 :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 개별 상담서비스 제공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b>인건비(1명)</b> · 기본급 : 2,009,900원*1명*12월 = 24,119 · 명절휴가비: 1,205,940원*1명* 2회 = 2,412 · 특수근무수당 : 50,000원*1명*12월 = 600 · 여비 : 200,000원*1명*12월 = 2,400 · 사회보험 : 210,000원*1명*12월 = 2,520 · 퇴직연금 : 150,000원*1명*12월 = 1,800 <b>소계 = 33,851</b>	
		<b>자살예방 사업비</b> · 자살예방의날 기념 캠페인 : 4,000,000원*1회 = 4,000 · 기관대상 자살예방 홍보 : 434,500원*2회 = 869 · 센터차량 보험가입비 : 1,000,000원*1회 = 1,000 · 방문자용 보험가입비 : 1,000,000원*1회 = 1,000 <b>소계 = 6,861</b>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2.12. : 사업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자살예방의날 캠페인 11회 · 자살예방교육 12,169명 · 자살다빈도 홍보 23,964건 · 유관기관MOU 8기관	
2020년	· 자살예방의날 캠페인 31회 · 자살예방교육 1,409명 · 자살다빈도 홍보 36,576건	
2021년	· 자살예방의날 캠페인 7회 · 자살예방교육 2,025명 ·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3,646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0,720	40,720	-	-	
2020년	40,720	40,720	-	-	
2021년	40,720	40,72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5260
-----	-------	------------	-----	----------	----	------

#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P - 607~60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대상 : 인력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살고위험군 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맞춤형 사례관리로 생명사랑 지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0,000	40,000	40,000	-	40,000	-	
국 비							
도 비	12,000	12,000	12,000		12,000		
시 비	28,000	28,000	28,000		28,00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김포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4조 - 제12조
근거내용	<p><b>【법률】</b>  <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8.&gt;</p> <p><b>【조례】</b>  <b>제 12조(예산의 지원)</b>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 129보건복지 콜센터, 방문, 전화상담 등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자살 고위험군 발생신고 시 응급출동 :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하여 자살의뢰 대상자 대면상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생명사랑전담인력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	
		· 기본급 : 2,700,700원*1명*12월	= 32,408
		· 명절휴가비 : 1,576,000원*1명* 2회	= 3,152
		· 특수근무수당 : 50,000원*1명*12월	= 600
		· 가족수당 : 120,000원*1명*12월	= 1,440
		· 여비 : 200,000원*1명*12월	= 2,400
		소계	= 4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2.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1인 인건비	
2020년	1인 인건비	
2021년	1인 인건비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0,000	40,000	-	-	
2020년	40,000	40,000	-	-	
2021년	40,000	40,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5260
-----	-------	------------	-----	----------	----	------

#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P -60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2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살 고위험군 및 우울증 환자의 자살 감소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정신과적 치료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200	5,200	5,200	-	5,200	-	
국 비							
도 비	1,560	1,560	1,560		1,560		
시 비	3,640	3,640	3,640		3,64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김포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3조 - 제3조, 제12조
근거내용	<p><b>【법률】</b> <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8.&gt;</p> <p><b>【조례】</b> <b>제 3조(시장의 책무)</b> ① 김포시장은 생명존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p> <p><b>제 12조(예산의 지원)</b>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살 고위험군 및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적 치료 비용 및 사례관리에 필요한 치료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생명사랑치료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사업비 ·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130,000원*40명 = 5,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자살고위험군 발견 및 가족 치료비 지원
  - 2022.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치료비 지원	자살 11명 /우울 4명(실인원)	
2020년	치료비 지원	자살 12명 /우울 2명(실인원)	
2021년	치료비 지원	자살 27명 /우울 2명(실인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200	5,200	-	-	
2020년	5,200	5,200	-	-	
2021년	5,200	5,2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5260
-----	-------	------------	-----	----------	----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P - 60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89명(등록관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사회구성원 성장지원
- 예산요구 현황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1,970	52,294	52,294	-	13,300	△ 38,994	
국 비	25,985	26,147	26,147		6,650	△ 19,497	
도 비							
시 비	25,985	26,147	26,147		6,650	△ 19,49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5763(2021.10.18.)호와 관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비와 인건비 분리로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5조, 제82조 - 제6조
근거내용	<p><b>【법률】</b>  <b>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b>제82조(보조금 등)</b>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b>【조례】</b>  <b>제6조(운영비 지원)</b>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안 등 전문적 교육 필요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을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07-05 민간위탁금	<b>아동청소년사업비</b>	
		· 프로그램 강사비 : 60,000원*4회*10월	= 2,400
		·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 200,000원*10회	= 2,000
		· 외래치료비 지원 : 50,000원*5명*12월	= 3,000
		· 심리검사지원비 : 400,000원*5명	= 2,000
		· 프로그램 사후모임 운영 : 50,000원*10회	= 500
		· 아동청소년사업 홍보비 : 500,000원*4회	= 2,000
		· 교사 및 부모교육 진행비 : 500,000원*2회	= 1,000
		· 2차정서행동특성화검사 : 200,000원*2회	= 400
	<b>소계</b>	<b>= 13,300</b>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3.~ 11.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교사 및 학부모 교육
- 2022.12. : 사업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 등록관리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및 가족교육 · 집단프로그램 · 교사,학생 및 관계자 교육	54명(실인원) 815명(연인원) 268명(연인원) 2,252명(연인원)
2020년	· 등록관리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및 가족교육 · 집단프로그램 · 교사,학생 및 관계자 교육	75명(실인원) 795명(연인원) 93명(연인원) 1,098명(연인원)
2021년	· 등록관리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및 가족교육 · 집단프로그램 · 교사,학생 및 관계자 교육	89명(실인원) 893명(연인원) 2,144명(연인원) 3,455(연인원)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0,900	50,900	-	-	
2020년	51,970	51,970	-	-	
2021년	52,294	52,294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6급 박임순	전화	5027
-----	-------	------------	-----	------------	----	------

# (노인자살 예방사업) (P - 60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58,124명(김포시 65세이상 노인인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대상으로 교육, 검사, 사례관리, 등록관리 등 건강한 노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70,000</b>	<b>70,000</b>	<b>70,000</b>	<b>-</b>	<b>70,000</b>	<b>-</b>	
국 비							
도 비	35,000	35,000	35,000		35,000		
시 비	35,000	35,000	35,000		35,00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근거내용	<p><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8.&gt;</p> <p><b>【조례】</b></p> <p><b>제12조(예산의 지원)</b></p> <p>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의 개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 및 선별검사 실시
- 정신과 병의원 연계 등 노인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으로 사례관리, 센터 등록 등 지속적 관리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노인자살예방사업	307-05 민간위탁금	<b>인건비</b>	
		· 기본급 : 2,588,900원*1명*12월	= 31,067
		· 명절 휴가비 : 1,553,340원*1명*2회	= 3,107
		· 특수근무수당 : 50,000원*1명*12월	= 600
		· 추가연장근로수당 : 272,580원*1명*12월	= 3,271
		· 여비 : 200,000원*1명*12월	= 2,400
		· 퇴직연금 : 259,290원*1명*12월	= 3,111
		<b>소계</b>	<b>= 43,556</b>
		<b>프로그램 운영비</b>	
		· 프로그램 진행비 : 500,000원*3회*2분기	= 3,000
		· 프로그램 강사비 : 80,000원*3명*12월	= 2,880
		· 통합사례회의 : 80,000원*5회	= 400
· 간담회비 : 100,000원*10회	= 1,000		
· 유관기관 방문비 : 20,000원*10기관	= 200		
· 리플렛 제작비 : 3,000원*2,000부	= 6,000		
· 홍보물품 제작비 : 5,000원*1,000부	= 5,000		
<b>소계</b>	<b>= 18,480</b>		
<b>운영비</b>			
· 수용비 및 수수료 : 200,000원*12월	= 2,400		
· 차량 대여료 : 2,500,000원*1회	= 2,500		
· 차량 주유비 : 150,000원*10회	= 1,500		
· 사무용품 구입비 : 156,400원*10월	= 1,564		
<b>소계</b>	<b>= 7,964</b>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자살예방사업 진행
- 2022.12. : 사업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노인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전화위복	58명(실인원) 1,545명(연인원) 564명(연인원) 359건
2020년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노인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전화위복	87명(실인원) 1,432명(연인원) 278명(연인원) 330건
2021년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노인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전화위복	55명(실인원) 1,711명(연인원) 220명(연인원) 755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0,000	70,000	-	-	
2020년	70,000	70,000	-	-	
2021년	70,000	70,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5260
-----	-------	------------	-----	----------	----	------

# (자살예방시스템 확충)(P - 60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6,008명(자살위험 선별검사 인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시민 대상 시스템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10,000	110,000	110,000	-	110,000	-	
국 비							
도 비	55,000	55,000	55,000		55,000		
시 비	55,000	55,000	55,000		55,00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근거내용	<p><b>【법률】</b>  <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8.&gt;</p> <p><b>【조례】</b>  <b>제12조(예산의 지원)</b>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 사유
  - 자살 위험군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역사회 내 자살수단 접근 차단 필요
- 중점추진사항(사업내용)
  - 자살시도율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로고라이트 설치, 생명사랑캠페인 등 생명사랑 조성
  - 응급의료기관을 포함 자살예방과 관련된 기관과 정기적 간담회 및 통합사례회의 개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자살예방 시스템확충	307-05 민간위탁금	<b>인건비</b>	
		· 기본급 : 2,928,750원*1명*12월	= 35,145
		2,281,570원*1명*12월	= 27,379
		· 명절휴가비 : 1,757,250원*1명*2회	= 3,515
		1,368,940원*1명*2회	= 2,738
		· 특수근무수당 : 50,000원*2명*12월	= 1,200
		· 가족수당 : 60,000원*1명*12월	= 720
		· 추가연장 근로수당 : 308,280원*1명*12월	= 3,699
		243,170원*1명*12월	= 2,918
		· 여비 : 200,000원*2명*12월	= 4,800
		· 퇴직연금 : 290,650원*1명*12월	= 3,488
		236,230원*1명*12월	= 2,835
		<b>소계</b>	<b>= 88,437</b>
		<b>프로그램 운영비</b>	=
		· 번개탄 판매 개선 사업비 : 15,000원*35기관*4분기	= 2,100
· 농약 보관함 구입비 : 120,000원*100가구	= 12,000		
· 농약 보관함 사업비 : 70,000원*15지역*2분기	= 2,100		
· 농약 판매 개선 홍보 : 20,000원*25기관*2분기	= 1,000		
· 약물 판매 개선 홍보 : 30,000원*10기관*4분기	= 1,200		
<b>소계</b>	<b>= 18,400</b>		
<b>운영비</b>	=		
· 수용비 및 수수료 : 463,000원	= 463		
· 영업배상 : 100,000원*5명	= 500		
· 신용보증보험 : 1,000,000원*1회	= 1,000		
· 차량 주유비 : 100,000원*12월	= 1,200		
<b>소계</b>	<b>= 3,163</b>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자살예방사업 진행
- 2022.12. : 사업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번개탄판매개선사업 · 농약보관함사업	28개소 194개
2020년	· 번개탄판매개선사업 · 농약보관함사업	30개소 246개
2021년	· 번개탄판매개선사업 · 농약보관함사업	31개소 246개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0,000	110,000	-	-	
2020년	110,000	110,000	-	-	
2021년	110,000	110,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5260
-----	-------	------------	-----	----------	----	------

#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P - 608~60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1,300	13,800	13,800	-	14,400	600	
국 비							
도 비	11,300	13,800	13,800		14,400	600	
시 비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3조 - 제5조
근거내용	<p><b>【법률】</b>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8. 12. 11.&gt;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2. 11.&gt;</p> <p><b>【조례】</b>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회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 사유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의 처우 개선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정신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0원*24명*12월 = 14,4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12.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20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20명	
2021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24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100	8,650	-	2,450	
2021년	13,800	9,800	-	4,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6급 박임순	전화	5027
-----	-------	------------	-----	------------	----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지원))(P -60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75명(정신질환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4,236	68,472	68,472	-	30,852	△37,620	
국 비	17,118	34,236	34,236		15,426	△18,810	
도 비							
시 비	17,118	34,236	34,236		15,426	△18,81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2700(2021.9.15.)호 관련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비율 기준으로 일괄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4조, 제80조
근거내용	<b>【법률】</b> <b>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b>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b>제80조(비용의 부담)</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 집중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정신질환으로 행정입원, 응급입원한 자 : 입원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국비지원)	307-05 민간위탁금	<b>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비</b> · 조기치료지원비 : 171,300원* 40명 = 6,852 · 행정입원비 지원 : 1,125,000원* 20명 = 22,500 · 응급입원비 지원 : 100,000원*10명 = 1,000 ·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100,000원* 5명 = 500	

## □ 사업 추진계획

### ○ 향후계획

- 2022.01.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계획수립
- 2022.03. ~ 05.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집중 홍보
- 2022.01. ~ 12.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2022.12. : 사업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25명(실인원)/ 66명(연인원)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50명(실인원)/ 78명(연인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4,236	34,236	-	-	
2021년	68,472	68,472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7급 최현옥	전화	5028
-----	-------	------------	-----	----------	----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비지원))(P - 60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27명(정신질환자 치료지원 126명, 전담인력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6,920	86,920	86,920	-	86,920	-	
국 비							
도 비	43,460	43,460	43,460		43,460		
시 비	43,460	43,460	43,460		43,46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0조</li> <li>- 제4조</li> <li>- 제11조</li> </ul>
근거내용	<p><b>【법률】</b>  <b>제80조(비용의 부담)</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b>【조례】</b>  <b>제4조(비용지원)</b>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b>제11조(부담의 경감 등)</b>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전담인력 1명 인건비
  - 정신질환자 초기진단,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소득기준 제한 없음)
  - 외래진료(\*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 2,500,000원*1명*12월 = 30,000</li> <li>· 수당 : 250,000원*1명*12월 = 3,000</li> <li>· 4대보험료 : 200,000원*1명*12월 = 2,400</li> <li>· 퇴직적립금 : 200,000원*1명*12월 = 2,400</li> <li>· 여비 : 183,330원*1명*12월 = 2,200</li> </ul>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진단비 지원 : 400,000원*32명 = 12,800</li> <li>· 응급입원비 지원 : 100,000원*26명 = 2,600</li> <li>· 행정입원비 지원 : 1,000,000원*11명 = 11,000</li> <li>·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 360,000원*3명 = 1,080</li> <li>·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360,000원*54명 = 19,440</li> </ul>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계획수립
- 2022.01. ~ 12. : 정신질환자 치료비(도비) 지원
- 2022.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기간 : 2020.04.01. ~ 2020.12.31.</li> <li>- 채용인원 : 1명</li> <li>-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건수 : 38건</li> </ul>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기간 : 2021.01.01. ~ 2021.12.31.</li> <li>- 채용인원 : 1명</li> <li>-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건수 : 126건</li> </ul>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6,920	86,920	-	-	
2021년	86,920	86,92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7급 최현옥	전화	5028
-----	-------	------------	-----	----------	----	------

#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 운영) (P - 60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심사위원 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시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로 정신질환자의 장기 입원기간 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720	6,720	6,720	-	6,720	-	
국 비							
도 비							
시 비	6,720	6,720	6,720		6,720		
기 타							자부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근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3조제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li> <li>- 제54조제③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li> <li>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li> <li>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 등</li> </ol> </li> </ul>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시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80,000원*7명*12월 = 6,720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 운영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추진
- 2022.12. :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 운영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12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566명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555명 · 퇴원명령 : 11명	
2020년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12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443명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440명 · 퇴원명령 : 3명	
2021년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7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306명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305명 · 퇴원명령 : 1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720	5,665	-	1,055	
2020년	6,720	5,528	-	1,192	
2021년	6,720	3,720	-	3,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7급 최현옥	전화	5028
-----	-------	------------	-----	----------	----	------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사업명변경)(P - 60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82,986명(만19~34세 경기도 김포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 82,98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49,240	149,240	149,240	-	69,240	△80,000	
국 비	74,620	74,620	74,620		34,620	△40,000	
도 비	11,193	11,193	11,193		5,193	△6,000	
시 비	63,427	63,427	63,427		29,427	△34,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5758(2021.10.18.)호와 관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로 감액
- 사업명 변경(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 제64조, 제80조 - 제6조
근거내용	<p><b>【법률】</b></p> <p><b>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b>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b>제80조(비용의 부담)</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시조례】</b></p> <p><b>제6조(운영비 지원)</b>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성
  - 청년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 실태 미흡
- 중점 추진사항(사업내용)
  - 청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선별 및 등록
  - 청년마인드링크, 정신건강,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운영
  - 청년 정신질환 초기 외래치료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통합정신 건강 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b>청년마인드링크, 프로그램 운영비</b>	
		· 마인드링크 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 5,000원*1,000부	= 5,000
		· 마인드링크 프로그램 운영비 : 5,000원*90명*12회	= 5,400
		· 스트레스관리 안내서 제작 : 2,000원*340부	= 680
		·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 5,000원*4그룹*100회	= 2,000
		· 신체건강교육 안내서 제작 : 7,200원*200부	= 1,440
		· 신체건강교육 참여자 워크북 제작 : 10,000원*200부	= 2,000
		· 조기중재 가족교육 : 100,000원*10회	= 1,000
		· 인식개선캠페인 : 500,000원*4회	= 2,000
		·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 : 300,000원*10회	= 3,000
· 조기정신증인식개선 강좌 : 500,000원*2회	= 1,000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 2,000원*2종*500개	= 2,000		
· 청년 선별검사지 제작 : 2,240원*2종*1,000부	= 4,480		
		<b>소계 = 30,000</b>	
		<b>청년정신건강외래치료비 지원</b>	
		· 청년치료비 지원 : 360,000원*109명	= 39,2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조기정신증 선별, 조기중재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 2022.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청년사업 전담인력 채용 : 1명 청년 조기정신증 프로그램 운영 인원수 : 60명(연인원) 청년 조기정신증 홍보책자 제작 : 1600부	
2021년	청년사업 전담인력 채용 : 2명 청년 조기정신증 프로그램 운영 인원수 : 303명(연인원) 청년 조기정신증 홍보책자 제작 : 1800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49,240	149,240	-	-	
2021년	149,240	149,24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6급 박임순	전화	5027
-----	-------	------------	-----	------------	----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P - 609~61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인력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살예방사업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5,320	52,952	35,320	17,632	70,980	18,028	
국 비	17,660	26,476	17,660	8,816	35,490	9,014	
도 비							
시 비	17,660	26,476	17,660	8,816	35,490	9,0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6070(2021.10.25.)호와 관련,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 1.5명에서 2명으로 증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김포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5조 - 제13조 - 제12조
근거내용	<p><b>【법률】</b></p> <p><b>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b>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b>                      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b>【조례】</b></p> <p><b>제12조(예산의 지원)</b>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필요성
  - 김포시의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문인력 확충
- 중점 추진사항
  - 자살시도자, 유가족, 자살생각자 등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등록
  -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사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기본급 : 2,280,900원*2명*12월 = 54,742	
		· 명절 휴가비 : 1,368,540원*2명* 2회 = 5,474	
		· 특수근무수당 : 50,000원*2명*12월 = 1,200	
		· 가족수당 : 40,000원*2명*12월 = 960	
		· 여비 : 200,000원*2명*12월 = 4,800	
		· 사회보험 : 158,500원*2명*12월 = 3,804	
		<b>소계</b> = <b>70,980</b>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2.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1인 인건비	
2021년	2인 인건비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5,320	35,320	-	-	
2021년	52,952	52,952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5260
-----	-------	------------	-----	----------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P - 610~6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 구강, 영양, 비만 등) 추진으로 건강행태 개선 및 예방으로 만성질환 관련 위험요인 감소
- 예산요구 현황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498,572	497,562	497,562		480,622	△16,940	
국 비	249,286	248,781	248,781		240,311	△8,470	
도 비							
시 비	249,286	248,781	248,781		240,311	△8,4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분배가 2021년은 북부보건과 7%(36,460천원), 보건사업과 93%(497,562천원)이고 2022년은 북부보건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해 북부보건과 10%(53,400천원), 보건사업과 90%(480,622천원)로 분배함으로써 16,940천원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근거내용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3년부터 기존 국고보조사업(9개 사업)을 보건사업지침에 의거 1개 사업으로 통합 편성 운영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8개 분야)

- ① 음주폐해예방(절주) ② 신체활동 ③ 영양, 비만예방관리 ④ 구강보건
- 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⑥ 한의약건강증진 ⑦ 여성어린이특화 ⑧ 지역사회중심재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명/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 86,880원*2명*170일 = 29,539</li> <li>· 유급수당 : 86,880원*2명*43일 = 7,472</li> <li>· 명절수당 : 500,000원*2명 = 1,000</li> <li>· 4대보험료 등 : 37,011,000원*13% = 4,811</li> </ul>	
		<b>소계 = 42,822</b>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칭 교육용 세라밴드 : 2,700원*2,000개 = 5,400</li> <li>· 홍보물구입 : 2,000원*4종*3,000개 = 24,000</li> <li>· 워크온 프로그램 사용료 : 1,750,000원*6월 = 10,500</li> <li>· 스트레칭 리플렛 : 550원*2종*1,000개 = 1,100</li> <li>· 버스 외면 광고 : 462,000원*10대*2월 = 9,240</li> <li>· 절주 홍보 실천노트 제작 : 1,300원*1,000개 = 1,300</li> <li>·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 : 55,000원*10개 = 550</li> <li>· 영양, 비만예방 교육 책자 구입 : 3,000원*500개 = 1,500</li> <li>· 요리실습재료비 : 300,000원*6회 = 1,800</li> <li>· 사무용품 구입 : 3,000원*30종 = 90</li> </ul>	
		통합건강증진 건강달력 제작	
		· 통합건강증진 달력 제작비 : 3,000원*5,000부 = 15,000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 교육비 : 240,000원*24명 = 5,760	
		구강보건사업 운영	
		· 구강보건 교육용품 : 4,500원*1,500개 = 6,750	
		· 불소용액양치용 배부통 구입 : 500원*10,000개 = 5,000	
		· 치주질환 관리용품 : 2,100원*7,000개 = 14,700	
		· 구강건강교실 운영 용품 : 2,500원*3,000개 = 7,500	
		· 어린이 구강도서 구입 : 10,000원*900권 = 9,000	
		· 어린이 구강보건교육용 교구 구입 : 2,300원*1,000개 = 2,300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	
		· 고혈압·당뇨병 관리 홍보지 제작 : 1,350원*2,000부 = 2,700	
		· 고정식 자동혈압기 장비 유지비 : 150,000원*10회 = 1,500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안내문 제작 : 50원*7,000부 = 350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예방관리책자 제작 : 1,000원*2,000권 = 2,000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 1,000원*3,090개 = 3,090	
		· 고당e공부방 사용료 : 55,000원*12개월 = 660	
		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	
		· 재활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 250,000원*2회 = 500	
		· 재활사업 한파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 2,000원*2,600개 = 5,200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운영	
		· 모유수유실 운영비 : 100,000원*12월 = 1,200	
		·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 : 2,000원*2,000명 = 4,000	
		· 임신부 프로그램 운영비 : 500,000원*6월 = 3,000	
		<b>소계 = 145,690</b>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회의 운영 · 모유수유사업단 회의 운영 : 200,000원*1회 = 200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간담회 : 30,000원*10명*2회 = 600 <b>소계 = 800</b>		
	301-12 기타보상금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 어르신 꿀잠 스트레칭 강사비 : 80,000원*12회*9월 = 8,640 · 직장인 짬짬이 요가 강사비 : 80,000원*6회 = 480 · 키즈짱! 운동교실 강사비 : 80,000원*20회 = 1,600 · 어린이 요리교실 강사비 : 80,000원*6회 = 480 · 독거어르신 요리교실 강사비 : 80,000원*6회 = 480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운영 · 산후우울증교육 강사비 : 80,000원*1명*6주(1시간) = 480 · 산전체조교실 강사비 : 80,000원*1명*24주(1시간) = 1,920 · 모유수유교육 강사비 : 150,000원*1명*24주(2시간) = 3,600 · 아기용품만들기 강사비 : 120,000원*1명*24주(2시간) = 2,88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 재활운동 교실 강사비 : 80,000원*1명*12회 = 960 · 작품활동 프로그램 강사비 : 120,000원*1명*12회 = 1,440 <b>소계 = 22,960</b>		
	307-01 의료 및 구료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검사 소모품 · 대사증후군 관리 검사용품 : 4,000원*3,400명 = 13,600 · 혈당소모품 등 : 2,000원*1,095명 = 2,190 · 혈중지질 검사 소모품 : 4,000원*1,000명 = 4,000 · 알콜숨, 란셋검사 소모품 : 3,440원*1,000명 = 3,44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검사 소모품 · 혈당소모품 등 : 2,000원*800명 = 1,600 · 혈중지질 검사 소모품 : 4,000원*800명 = 3,200 충치예방용 불소 구입 : 2,000원*3,500개 = 7,000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소모품 구입 · 혈당검사용 소모품 : 2,000원*500명 = 1,000 · 혈중지질 검사 소모품 : 3,000원*500명 = 1,500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 철분제 : 6,000원*8,400개 = 50,400 · 엽산제 : 3,000원*5,400개 = 16,200 임산부 건강관리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 기자재 구입 : 6,000원*5종*20개 = 600 · 유축기 및 소모품 구입 : 100,000원*20대 = 2,000 <b>소계 = 106,730</b>		
	202-01 국내여비	건강생활실천 공무원 국내 여비 · 여비 : 100,000원*1명*10월 = 1,000 구강보건사업 공무원 국내 여비 · 여비 : 100,000원*1명*12월 = 1,200 구강보건사업 공무원 국내 여비 · 여비 : 100,000원*1명*12월 = 1,200 <b>소계 = 3,400</b>		
	인력운영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건강생활실천사업 공무원 인건비 (1명) · 기본급: 2,319,150원(6호봉)*1명*6월 = 13,914 · 기본급: 2,415,020원(7호봉)*1명*6월 = 14,490 · 정액급식비: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2,403,085원*60%*2회*1명 = 2,883 · 퇴직금 : 2,402,975원 = 2,402 · 시간외수당 : 19,770원*10시간*12월 = 2,372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인력운영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구강보건사업 공무원 인건비 (1명)	
		· 기본급 : 2,367,310원(5호봉)*1명*2월	= 4,734
		· 기본급 : 2,391,150원(6호봉)*1명*10월	= 23,911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387,177원*1명*2회*60%	= 2,864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2) : 120,000원*12월	= 1,440
		· 퇴직금 : 2,753,490원*1명	= 2,753
		· 시간외수당 : 18,990원*6시간*12월	= 1,367
		구강보건사업 공무원 인건비 (1명)	
		· 기본급 : 2,391,150원(6호봉)*1명*5월	= 11,955
		· 기본급 : 2,415,020원(7호봉)*1명*7월	= 16,905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405,074원*1명*2회*60%	= 2,886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2) : 120,000원*12월	= 1,440	
	· 퇴직금 : 2,782,727원*1명	= 2,782	
	· 시간외수당 : 19,120원*6시간*12월	= 1,376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공무원 인건비(1명)			
· 기본급 : 2,391,150원(6호봉)*1명*9월	= 21,520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9월	= 1,260		
· 명절수당 : 2,391,150원*1명*1회*60%	= 1,434		
· 퇴직금 : 2,352,000원*1명*1회	= 2,352		
	<b>소계</b>	<b>= 142,080</b>	
	304-01 연금부담금	건강생활실천 공무원 국민연금	
· 34,866,642원*1명*4.5%		= 1,568	
구강보건사업 공무원 국민연금			
· 35,998,012*1명*4.5%		= 1,619	
· 36,243,619*1명*4.5%		= 1,630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공무원 국민연금			
· 24,215,040원*1명*4.5%	= 1,089		
	<b>소계</b>	<b>= 5,906</b>	
	304-02 국민건강보험금	건강생활실천 공무원 건강보험료	
· 34,866,642원*1명*5.145%		= 1,793	
구강보건사업 공무원 건강보험료			
· 35,998,012*1명*5.145%		= 1,852	
· 36,243,619*1명*5.145%		= 1,864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공무원 연금부담금			
· 24,215,040원*1명*5.145%	= 1,245		
	<b>소계</b>	<b>= 6,754</b>	
	304-04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건강생활실천 공무원 고용보험료	
· 34,866,642원*1명*1.65%		= 575	
구강보건사업 공무원 고용보험료			
· 35,998,012*1명*1.65%		= 593	
· 36,243,619*1명*1.65%		= 598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공무원 고용보험료			
· 24,215,040원*1명*1.65%	= 399		
	<b>소계</b>	<b>= 2,165</b>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인력운영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04-04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	건강생활실천 공무직 산재보험료 · 34,866,642원*1명*1.003% =	349
		구강보건사업 공무직 산재보험료 · 35,998,012*1명*1.003% =	361
		· 36,243,619*1명*1.003% =	363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공무직 산재보험료 · 24,215,040원*1명*1.003% =	242
		<b>소계 =</b>	<b>1,315</b>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총 534,022천원  
= 보건사업과: (사업운영비)322,402천원 + (인력운영비)158,220천원 + 북부보건과: (운영비)53,400천원

## □ 사업 추진계획

### ○ 향후계획

- 2022.01. : '21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계획수립
- 2022.03. ~ 11. :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
- 2022.12. :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 보고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b>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b> ·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 : 695회/9,404명 ·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 332회/11,457명 · 생애주기별 절주사업 : 103회/17,399명 · 통합건강증진사업 캠페인 및 홍보 : 2회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요리교실운영 : 63회/5,200명 ·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33회/424명 <b>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b> · 고혈압·당뇨 이동교실 : 51회/926명, · 검사측정 : 2,778건 ·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운영: 15회/1,599명 참여 ·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 : 30회/428명 <b>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b>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1,127명, · 건강서비스 : 2,393회, · 자원연계 : 105명 · 활력충전 재활프로그램 운영 : 34회/672명 참여 <b>구강보건사업 운영</b> ·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 2,603회/19,518명 ·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꾸러기이닦기교실 운영 : 34회/2,299명 ·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 40회/364명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 158회/8,585명 <b>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b> · 한방기공체조교실 : 656회/12,212명 · 한방육아교실 : 14회/189명, 한방중풍예방교실 : 3회/69명 · 한방자연건강마을 : 8회/127명 <b>모자보건사업 운영</b> ·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3,016명 · 임신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 115회/1,022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9,024건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p><b>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 15회 434명</li> <li>· 건강증진센터 운영 : 1,275명</li> <li>·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 492명</li> <li>·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 2,594명</li> <li>· 절주교육 : 758명</li> <li>· 대사증후군관리사업(운동,영양,질환상담) : 258명(실인원)</li> </ul> <p><b>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고혈압·당뇨 표준화 교육(상설) : 115회/115명</li> <li>· 고혈압당뇨병 1:1 방문 표준화 교육 : 8회/63명</li> </ul> <p><b>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690명</li> <li>· 건강서비스 : 3,490회, 자원연계 246명</li> </ul> <p><b>구강보건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 유아, 청소년, 장애인, 경로당 등 1,436회/33,845명</li> <li>· 학교구강보건실운영 : 3회/272명</li> <li>· 불소용액양치사업 : 시민 7,213명</li> <li>· 바른이닦기실천 유아기관 : 3개 유아기관/288명</li> <li>· 임신부 구강관리사업 : 105명</li> </ul> <p><b>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893명</li> <li>·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10명</li> </ul> <p><b>모자보건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3,103명</li> <li>·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9,946건</li> </ul>	
2021년	<p><b>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675명</li> <li>· 대사증후군관리사업(신체활동, 영양, 질환관련 상담) :456명</li> </ul> <p><b>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혈압·당뇨병 예방 표준화 상설교육 비대면 상설교육 : 12회/128명</li> <li>· 1:1 가정방문교육 : 72회/72명</li> <li>· 고당e공부방 온라인 학습 수료자 : 86명</li> <li>· 당뇨병 식이 실습 교육 : 6회/11명(실)/33명(연)</li> </ul> <p><b>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626명</li> <li>· 건강서비스 : 2,066회</li> <li>· 자원연계 : 288명</li> </ul> <p><b>구강보건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 유아, 청소년, 장애인, 경로당 등 199회/12,427명</li> <li>· 불소용액양치사업 : 시민 55,293명</li> <li>· 바른이닦기실천 유아기관 : 3개 유아기관/187명</li> <li>· 임신부 구강관리사업 : 276명</li> </ul> <p><b>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으로 내 건강 지키기’ 사업 : 1,795명</li> <li>·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 9명</li> </ul> <p><b>모자보건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3,546명</li> <li>·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14,820개</li> </ul>	10.31.일까 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59,232	554,598	-	4,634	
2020년	498,572	494,290	-	4,282	
2021년	497,562	346,789	-	150,77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보건9급 이문영	전화	5016
-----	-------	------------	-----	----------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P - 611~6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37명 (등록인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양측면에 있어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는 임신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 대상 맞춤 영양교육, 식품지원 등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60,280	162,600	162,600	-	170,848	8,248	
국 비	80,140	81,300	81,300		85,424	4,124	
도 비							
시 비	80,140	81,300	81,300		85,424	4,12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영양플러스사업 등록자 대상 보충식품 지원 등으로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취약계층 임신부 및 영유아의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
- 공무원 근로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신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 개선
- 대상자별 월 2회 보충식품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신체계측 및 빈혈측정 등) 실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 공무직 인건비	
		· 기본급 : 2,464,360원(10호봉)*1명*10월	= 24,644
		· 기본급 : 2,487,970원(11호봉)*1명*2월	= 4,976
		· 정액급식비 : 140,000*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395,128원*60%*2회*1명	= 2,874
	· 가족수당(배우자) : 40,000원*1명*12월	= 480	
	· 가족수당(둘째자녀) : 60,000원*1명*2월	= 120	
	· 초과근무수당 : 20,080원*1명*10시간*10월	= 2,008	
	· 퇴직금 : 2,532,290원	= 2,532	
		<b>소계</b>	<b>= 39,314</b>
304-01 연금부담금	국민연금 36,315,000원*4.5%	= 1,634	
	304-02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료 36,315,000원*5.145%	= 1,869
	304-04 고용보험료부 담금	고용보험료 36,315,000원*1.65%	= 599
		산재보험료 36,315,000원*1.003%	= 364
	<b>소계</b>	<b>963</b>	
지역사회통 합건강증진 사업(영양플 러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주거, 이유식 용기 등 구입 : 2,500원*2종*1,000개	= 5,000
		·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물 구입 : 2,000원*1,000개	= 2,000
		· 홍보용 현수막 제작 : 50,000원*2종*2개	= 200
		<b>소계</b>	<b>= 7,200</b>
	201-03 행사운영비	·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실습재료비 및 강사비	= 120
		· 요리실습 강사비 : 120,000원*1회	= 780
		· 실습재료비 : 9,750원*80명	= 780
		<b>소계</b>	<b>= 900</b>
	307-01 의료및구료비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 118,368
		· 72,000원*137명*12월	
202-01 국내여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공무직 여비	= 600	
	· 여비 : 50,000원*1명*12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총 170,848천원  
= (사업운영비)127,068천원 + (인력운영비)43,780천원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기본계획수립
- 2022.01. ~ 02. 세부추진계획
- 2022.03. ~ .11. : 영양플러스사업 집행
- 2022.12. : 결과보고 및 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24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및 평가 실시 : 2,217명/365명 · 대상자 가정방문 및 상담 : 104회/345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 간식 실습 : 4회	

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24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및 평가 실시 : 1,010명/508명 · 대상자 가정방문 및 상담 : 63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 간식 실습 : 1회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19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및 평가 실시 : 1,099명/610명 · 대상자 가정방문 및 상담 : 95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 간식 실습 : 2회	10.31.일까 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34,930	133,937	-	993	
2020년	160,280	132,295	-	27,985	
2021년	162,600	113,241	-	49,359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간호8급 이은임	전화	5046
-----	-------	------------	-----	----------	----	------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P - 612~61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김포시 전지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금연을 원하는 시민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도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20,308	227,208	227,208	-	238,856	11,648	
국 비	110,154	113,604	113,604		119,428	5,824	
도 비							
시 비	110,154	113,604	113,604		119,428	5,82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434(2021.10.27.)호와 관련, 2021년 대비 11,648천원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25조, 제26조
근거내용	<p><b>제8조</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p> <p><b>제9조</b>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b>제9조의5</b>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b>제25조</b>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p> <p><b>제26조</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취학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및 성인대상 금연교육 실시
- 금연클리닉 운영 : 보건소 상설 주(야)간 금연클리닉, 금연아파트 및 기업체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 금연구역(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학교 주변 등) 지정 및 금연표지판 설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지도·단속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b>소계 = 35,346</b>		
		· 기본급 : 86,880원*247일 = 21,459		
		· 유급휴일수당 : 86,880원*67일 = 5,821		
		· 명절휴가비 : 500,000원*2회 = 1,000		
		· 4대보험료 : 4,066,000원 = 4,066		
	· 금연상담사(기간제근로자) 여비 : 20,000원*150회 = 3,000			
	201-01 사무관리비	<b>소계 = 53,430</b>		
		·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노면표식 : 80,000원*150개*2종 = 24,000		
		· 금연구역 스티커 구입 : 2,200원*2,000개*2종 = 8,800		
		·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 : 2,000원*1,975개*2종 = 7,900		
· 금연아파트 현판 제작 : 200,000원*24개 = 4,800				
· 금연아파트 현수막 제작 : 55,000원*30개 = 1,650				
· 금연행동요법 용품구입 : 2,000원*2,250개 = 4,500				
· 금연상담 및 교육용 교구 구입 : 590,000원*2개 = 1,180				
· 금연상담실 장비유지보수 : 300,000원*2대 = 600				
201-03 행사운영비	· 유아대상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 250,000원*20회 = 5,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b>소계 = 510</b>			
	· 금연사업 회의 및 행사 급식비 : 7,000원*15명*4회 = 420			
· 금연사업 회의 및 행사 간식비 : 3,000원*15명*2회 = 90				
301-12 기타보상금	<b>소계 = 69,500</b>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야간) : 90,000원*2명*140회 = 25,200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주간) : 60,000원*4명*140회 = 33,600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비 : 100,000원*40회 = 4,000			
·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 50,000원*134명 = 6,700				
307-01 의료및구료비	· 금연보조제 구입 : 10,000원*10종*300갑 = 30,000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b>소계 = 45,070</b>		
		· 기본급 : 2,395,130원*1명*12개월 = 28,740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개월 = 1,680		
		· 명절휴가비 : 1,437,077원*1명*2회 = 2,873		
		· 가족수당 : 20,000원*1명*12회 = 240		
		· 시간외근무수당 : 19,900원*12시간*1명*12개월 = 2,866		
		· 연차유급휴가수당 : 106,160원*1명*10일 = 1,062		
		· 퇴직적립금 : 3,000,000원*1회 = 3,000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304-01 연금부담금	· 국민연금 : 37,463,000원*4.5%	=	1,686	
	304-02 국민건강보험금	· 국민건강보험금 : 37,463,000원*5.145%	=	1,928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고용보험료 부담금등	· 고용보험료 : 37,463,000원*1.65% · 산재보험료 : 37,463,000원*1.003%	=	619 376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총238,856천원 = 사업비 193,786천원 + 인력운영비 45,070천원

## □ 사업 추진계획

### ○ 향후계획

- 2022.01. :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 2022.01. ~ 12. : 사업추진
- 2022.12. : 금연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846명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1,331명 금연교육 : 25,031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6,824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18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13개소(총 28개소)	
2020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391명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1,281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4,068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7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10개소(총 38개소)	
2021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748명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642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7,479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72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7개소(총 45개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67,020	263,024	-	3,996	
2020년	220,308	206,351	-	13,957	
2021년	227,208	186,782	-	40,42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행정8급 김민경	전화	5030
-----	-------	------------	-----	----------	----	------

# (금연환경조성사업)(신규)(P - 61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 전지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홍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	-	208,000		
국 비							
도 비							
시 비					208,00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신규 조성된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노후화된 금연표지판 교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근거내용	<b>제8조</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b>제9조</b>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법령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6조
근거내용	<b>제4조</b> (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b>제6조</b> (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간접흡연의 위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 도시공원 금연구역 홍보를 위한 태양광(야광) 금연표지판 확대 설치
  - 신규 조성된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설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금연환경조성 사업	401-01 시설비	· 도시공원 금연구역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 설치 : 1,300,000원*160개소 = 208,000	
		<b>소계 = 208,000</b>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금연사업 계획 수립
- 2022.05. ~ 10.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 2022.01. ~ 12. : 사업추진
- 2022.12. : 금연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 금연구역 안내 노면표식 설치 : 김포골드라인 9개 지하철역 출입구 47개소 ·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5개소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6,824개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13개소(총 28개소)	
2020년	· 금연구역 안내 노면표식 설치 : 버스정류소 15개소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4,068개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10개소(총 38개소)	
2021년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7,479개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7개소(총 45개소)	10.31일 기준 실적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행정8급 김민경	전화	5030
-----	-------	------------	-----	----------	----	------

# (한방건강증진사업) (P - 61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한방 진료 및 한방 난임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향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3,000	9,300	9,300	-	9,300		
국 비							
도 비							
시 비	13,000	9,300	9,300		9,300		
기 타						자부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근거내용	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 도모
-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한방건강 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 350,000원*2대 = 700	
		· 토너 등 소모품 구입 : 100,000원 = 100	
	<b>소계 = 800</b>		
	307-01 의료및구료비	· 일회용침 등 소모품 구입 : 50,000원*5종 = 250	
· 한약제 등 의약품 구입 : 150,000원*5종 = 750			
·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 750,000원*10명 = 7,500			
<b>소계 = 8,500</b>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한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추진
- 2022.12. : 한방 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한방진료(5,023명), 한방난임사업(10명 지원, 1명 임신)	
2020년	· 한방진료(578명), 한방난임사업(10명 지원)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한방진료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2021년	· 한방난임사업(9명 지원)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한방진료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3,272	13,272	-	-	
2020년	13,000	12,997	-	3	
2021년	9,300	990	-	8,31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간호8급 이은임	전화	5046
-----	-------	------------	-----	----------	----	------

# (구강보건사업 추진) (P - 613~61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대상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구강보건 인식개선과 서비스 제공으로 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 및 구강건강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5,800</b>	<b>6,000</b>	<b>6,000</b>	<b>-</b>	<b>14,916</b>	<b>8,916</b>	
국 비							
도 비							
시 비	5,800	6,000	6,000		14,916	8,916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초과용 의료기구 구입 및 구강보건실 사무가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7조 제2항
근거내용	㉔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등 구강예방서비스 실시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 제공(정수물품 승인완료 : 2021.10.)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구강보건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치과진료장비 유지 보수 및 관리 : 200,000원*2대*2회	= 800
		· 구강보건실 소모품 및 교육용 칫솔 등 구입 : 1,500원*1,000개	= 1,500
		· 공기청정기 대여비 : 30,000원*1대*12개월	= 360
		<b>소계</b>	<b>= 2,660</b>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	· 장애인치과 진료(의료진) 봉사자 급식 및 간담회 : 8,000원*10명*5회 = 400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과진료 기자재(레진, 글러브 등) 구입 : 100,000원*20종 = 2,000	
	405-01 자산취득비	· 치과용 의료기구 멸균소독 기계 1대 = 4,200 · 중합기(레진 등 흠메우기 굳히는 기계) 1대 = 300 · 구강보건실 - 상부장 180,000원*2개 = 360 - 5단장 325,000원*3개 = 975 - 교육 및 상담용 테이블 1개: 325,000원*1개 = 325 - 교육 및 상담용 의자: 66,000원*6개 = 396 - 파티션(부속품 포함): 220,000원*15개 = 3,300 소계 = 9,856	

###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구강 보건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추진
- 2022.12. : 구강 보건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5,509회 / 42,232명 ·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꾸러기이달기교실 운영: 51회 / 1,226명 ·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171회 / 12,200명 · 노인 구강보건 및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63회 / 1,502명	
2020년	· 불소용액 양치사업: 8,119명 ·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1,436회 / 33,845명 · 노인 스케일링사업: 34명	
2021년	· 불소용액 양치사업: 55,293명 · 취약계층, 생활터별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199회 / 12,427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600	6,600	-	0	
2020년	5,800	5,800	-	0	
2021년	6,000	1,723	-	4,27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보건9급 이문영	전화	5016
-----	-------	------------	-----	----------	----	------

# (건강증진센터 운영) (P - 61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체력측정 및 체성분 검사 등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지도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2,264	1,440	1,440	-	2,967	1,527	
국 비							
도 비							
시 비	32,264	1,440	1,440		2,967	1,527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건강증진센터 민원 편의 물품구매 및 노후 사무가구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6호
근거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건강증진센터 운영 시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장비 유지비
- 사업내용
  - 기초체력 측정, 체성분 검사 및 운동상담 지도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헬스업 운동교실, 건강100세 운동교실)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 350,000원*2대 = 700	
		· 체력측정결과 인쇄용지 등 소모품 구입 100,000원 = 100	
	소계 = 800		
	405-01 자산취득비	· 가림막 커튼(레일포함) 182,000원*1개 = 182	
· 상담 테이블 287,000원*1개 = 287			
· 상담 의자 66,000원*3개 = 198			
		· 상하부 캐비닛 4도어 500,000원*3개 = 1,500	
		소계 = 2,167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추진
- 2022.12. : 건강증진센터 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내 건강 알기 사업 : 3,090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헬스업 운동교실 운영 : 66회/1,634명 · 건강100세 운동교실 운영 : 146회/4,205명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1,573명 · 건강증진센터 이용 : 10,065명	
2020년	· 내 건강 알기 사업 : 241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 운영 : 27회/938명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221명 · 건강증진센터 이용 : 1,034명	
2021년	· 내 건강 알기 사업 : 55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123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5,530	15,530	-	0	
2020년	32,264	30,122	-	2,142	
2021년	1,440	1,127	-	31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보건9급 이문영	전화	5016
-----	-------	------------	-----	----------	----	------

#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P - 614~61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동 108
- 사업규모 : 관내 초등학교 4학년 6,5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예방중심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교 구강건강증진 실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22,600	235,200	235,200		275,100	39,900	
국 비							
도 비	155,820	164,640	164,640		192,570	27,930	
시 비	66,780	70,560	70,560		82,530	11,9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학생구강검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18조
근거내용	<p>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lt;개정 2015. 5. 18.&gt;</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8조(구강건강사업)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lt;개정 2003. 7. 29.&gt;</p> <p>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협약된 치과의료기관을 통하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받고 치과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증진을 위함.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2018.10.01.)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지역협의체운영 참석수당 지급 : 80,000원*5명*2회 = 800	
		· 서식지 인쇄 : 80원*8,000매*4종 = 2,560	
	· 홍보 물품구입 : 10,000원*457개*2종 = 9,140		
		<b>소계 = 12,500</b>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 : 3,000원*200건 = 600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 40,000원*6,550명 = 262,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계획수립
- 2022. 02. : 참여 치과의료기관 선정
- 2022. 03. : 치과의료기관 및 초등학교 사업추진 절차 안내 및 지침서 배부
- 2022. 04. ~ 2022.11. : 초등학교 4학년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실시
- 2022. 12. : 사업결과 보고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1회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4,550명	
2020년	· 참여의료기관 계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검강검지 차년도 연기 결정	
2021년	· 참여의료기관 계약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6,699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96,212	179,108	-	17,104	
2020년	222,600	40	222,560	222,560	2021년 이월
2021년	457,760 (222,560+235,200)	269,425	-	188,33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의료기술6급 김애경 간호8급 이은임	전화	5029 5046
-----	-------	------------	-----	------------------------	----	--------------

# (비대면 교육 영상촬영실 설치)(신규)(P - 61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포스트 코로나19 환경 대비, 온라인 콘테츠(비대면) 교육 운영 공간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14,250	-	-	14,250	-	
국 비							
도 비							
시 비		14,250			14,25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비대면(온라인) 교육 운영 공간 조성
- 통합건강증진교육(영양, 금연·절주, 구강 등) 및 고혈압·당뇨 교육 등 비대면 교육 콘테츠 활용을 위한 교육실 설치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근거내용	<b>제19조(건강증진사업등)</b>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비대면(온라인) 강의 실시
  - 실시간 화상강좌 운영(줌, 구글미트, 네이버밴드 등 활용)
  - 실시간 강좌 불가능 시 사전 제작한 영상으로 온라인 강좌 운영(정수물품 승인완료 : 2021.11.)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비대면 교육 영상 촬영실 설치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음시설 설치(방음시트지) : 2,000,000원 = 2,000</li> <li>· 영상케이블 등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 2,000,000원 = 2,000</li> </ul> <p style="text-align: right;"><b>소계 = 4,000</b></p>	
	405-01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메라(촬영용카메라) : 1,700,000원*1개 = 1,700</li> <li>· 트라이포드(삼각대) : 800,000원*1개 = 800</li> <li>· 영상변환기(HD스위처) : 1,700,000원*1개 = 1,700</li> <li>· 중계 및 녹화PC : 1,250,000원*1대 = 1,250</li> <li>· 모니터(송출PC용) : 200,000원*2대 = 400</li> <li>· 캡처보드 : 300,000원*1대 = 300</li> <li>· 조명 : 400,000원*1대 = 400</li> <li>· 오디오믹서 : 200,000원*1대 = 200</li> <li>· 유선마이크 : 100,000원*1대 = 100</li> <li>· 무선마이크 : 500,000원*2대 = 1,000</li> <li>· 노트북(강의용PC) : 1,500,000원*1대 = 1,500</li> <li>· 테이블 : 250,000원*2개 = 500</li> <li>· 의자 : 100,000*4개 = 400</li> </ul> <p style="text-align: right;"><b>소계 = 10,250</b></p>	

## □ 사업 추진계획

### ○ 향후계획

- 2022.02. : 영상촬영실 설치 계획 수립
- 2022.03. : 방음시설 및 영상장비 구입 수의계약 요청
- 2022.04. : 촬영실 설치 완료 및 비대면 교육 실시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조무8급 김태훈	전화	5015
-----	-------	------------	-----	------------	----	------

# (예방접종 사업) (P - 61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김포시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및 홍보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99,780	92,854	92,854	-	55,855	△36,999	
국 비							
도 비							
시 비	99,780	92,854	92,854		55,855	△36,999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2020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비지급하였으며,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 시행함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보건소 자체 시행 예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28조1항
근거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방접종 사업 운영을 위한 안내문 및 예진표 등 제작
-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등 유지보수비
- 예방접종 백신(성인B형간염,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인플루엔자) 및 기자재 구입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예방접종사업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실 운영</li> <li>- 예진기록부 제작 : 60월*3종*10,000부 = 1,800</li> <li>- 접종실 진료가운 : 100,000원*5명 = 500</li> <li>·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물 제작</li> <li>-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 70월*15,000부*2회 = 2,100</li> <li>- 현수막제작 : 50,000원*30개 = 1,500</li> <li>-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 1,000원*4,000개 = 4,000</li> <li>· 공기청정기 대여비 : 30,000원*2대*12개월 = 720</li> </ul> <p style="text-align: right;"><b>소계 = 10,620</b></p>	
	201-02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지침 우편발송 : 5,500원*210개소 = 1,155</li> <li>· 예방접종 톨킷 우편발송 : 6,000원*180개소 = 1,080</li> <li>· 장비유지보수비</li> <li>- 약품냉장고, 신장체중계 등 : 500,000원*3대 = 1,500</li> </ul> <p style="text-align: right;"><b>소계 = 3,735</b></p>	
	307-01 의료및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백신구입</li> <li>- 인플루엔자 백신 : 14,000원*2,000명 = 28,000</li> <li>- 성인 B형간염 백신 : 4,600원*2,500명 = 11,500</li> <li>·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li> <li>- 알콜솜, 거즈 등 : 20,000원*5종*20개 = 2,000</li> </ul> <p style="text-align: right;"><b>소계 = 41,500</b></p>	

##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추진
- 2022.12. : 예방접종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예방접종 홍보물(어린이 황사 마스크): 1,650개 제작 배부</li> <li>· 고위험군 B형 간염 유료접종 실적: 2,181건</li> <li>· 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2,000개</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예방접종 홍보물(유아용 안전손톱깎이): 800개 제작 배부</li> <li>· 고위험군 B형 간염 유료접종 실적: 316건</li> <li>· 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1,160개</li> </ul>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예진표, 안내문 및 동의서 제작: 1,049,800매</li> <li>· 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2,000개</li> <li>· 예방접종 응급약품 및 소모품 구입: 2,451,490원</li> </ul>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8,600	42,660	-	5,939	
2020년	99,780	50,208	-	49,572	
2021년	92,854	31,177	-	61,67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서화정 간호8급 신소연	전화	8301 5484
-----	-------	------------	-----	----------------------	----	--------------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P - 61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예방접종실 전담인력 확보로 체계적인 접종등록 및 미접종자 관리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 향상과 집단면역 형성으로 시민의 감염병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6,544	26,780	26,780	-	26,780		
국 비	13,272	13,390	13,390		13,390		
도 비	3,982	4,017	4,017		4,017		
시 비	9,290	9,373	9,373		9,373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 28조1항
근거내용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반영예정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개인별 예방접종의 기록과 등록 관리를 통한 영유아 예방접종률 제고
- 미 접종자의 적기 접종을 독려하여 집단면역 형성으로 시민의 감염병 발생률 감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86,880원*1명*180일 = 15,638	
		· 유급수당 : 86,880원*1명*87일 = 7,558	
		· 명절수당: 500,000원*1명*1회 = 500	
		· 4대보험료 등 : 23,696,960원*13% = 3,084	
		<b>소계</b> = <b>26,780</b>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07.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 2022.01.~ 12.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성인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
- 2022.12. : 사업 집행 정산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 영유아 신규 등록 관리 : 1,737건 · 예방접종 및 관리 : 5,961건	
2020년	· 영유아 신규 등록 관리 : 214건 · 예방접종 및 관리 : 957건	
2021년	· 출생아 적기 접종 관리 : 1,945건 · 어르신 폐렴 접종 관리 : 3,486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5,820	25,404	-	415	
2020년	26,544	26,544	-	-	
2021년	26,780	20,285	-	6,49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신소연	전화	5484
-----	-------	------------	-----	----------	----	------

# (국가 예방접종 실시) (P - 616~61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249,001건(예방접종 목표 건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상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 감염병 발생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8,153,994</b>	<b>7,884,852</b>	<b>7,884,852</b>	-	<b>8,974,664</b>	<b>1,089,812</b>	
국 비	4,076,997	3,942,426	3,942,426	-	4,487,332	544,906	
도 비	1,223,100	1,182,727	1,182,727	-	1,346,200	163,473	
시 비	2,853,897	2,759,699	2,759,699	-	3,141,132	381,43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질병정책과-44177(2021.10.28.)호 관련, 2022년 예산액 증액 내시
- HPV 접종 대상자 기존 만 12세에서 만 12~26세로 확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2항, 제28조제1항
근거내용	<p>제24조(필수예방접종)</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회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만12세 이하)·성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민간병·의원(위탁의료기관)접종비 지원
  - 어린이 : ①BCG, ②B형간염, ③DTaP, ④IPV, ⑤DTaP-IPV, ⑥MMR, ⑦수두, ⑧일본뇌염(생백신) ⑨일본뇌염(사백신), ⑩Td, ⑪ Tdap ⑫뇌수막염, ⑬소아폐렴구균, ⑭A형간염 ⑮인유두종바이러스, ⑯소아인플루엔자 ⑰DTaP-IPV/Hib
  - 성 인 : ①어르신 인플루엔자, ②어르신 폐렴, ③장티푸스, ④신증후군출혈열, ⑤B형간염, ⑥HPV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병·의원(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 간염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항체 검사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구료비	<b>소계 = 8,974,664</b>	
		· 어린이 예방접종 : 40,083원*138,250건 = 5,541,470	
		· 60개월~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9,106원*34,956건 = 1,017,438	
		·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9,136원*3,844건 = 112,000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14,701원*3,847건 = 56,554	
		· HPV 1차 접종완료자 : 81,237원*1,421건 = 115,438	
		· HPV 미접종자 : 81,237원*4,897건 = 397,814	
		· 성인예방접종 : 27,817원*61,677건 = 1,715,704	
· B형 주산기 감염예방 : 167,394원*109건 = 18,246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사업지침 시달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2.01. ~ 12. : 매월 2회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등 지원 실시
  - 2022.12. : 사업 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 : 24,352건 ·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119,184건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 164건 ·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 39,741건	
2020년	·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 : 1,248건 ·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161,364건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 382건	
2021년	·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 123,876건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 212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918,631	5,918,619	-	11	
2020년	8,283,994	8,223,507	11,000	49,487	
2021년	7,895,852	6,421,035	-	1,474,81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서화정	전화	8301
-----	-------	------------	-----	----------	----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P - 61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월~12월(3개월)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인플루엔자 전문인력 확충으로 효율적인 예방접종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6,000</b>	<b>6,700</b>	<b>6,700</b>	-	<b>6,700</b>		
국 비							
도 비	6,000	6,700	6,700		6,700		
시 비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8조
근거내용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예정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관리, 전산등록, 미접종자 접종 독려 등 지원 인력 확충
- 1명 3개월 인건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지급 (1인)	
		· 기본급 : 86,880원*55일	= 4,778
		· 유급휴일수당 : 86,880원*13일	= 1,129
		· 4대 보험료 등 : 5,907,840*13%	= 793
		<b>소계</b>	<b>= 6,700</b>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9. : 채용 공고
- 2022.10. ~ 12.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채용기간 : 2019.9.16 ~ 12.27 - 채용 인원 : 1명 - 위탁의료기관 관리 : 어르신 152개소 , 어린이 96개소, 임신부 53개소 - 예방접종 및 관리 : 33,473건	
2020년	- 채용기간 : 2020.10.12 ~ 12.31 - 채용 인원 : 1명 - 위탁의료기관 관리 : 어르신 164개소 , 어린이 120개소, 임신부 68개소 - 예방접종 및 관리 : 30,727건	
2021년	- 채용기간 : 2021.10.27 ~ 12.31 - 채용 인원 : 1명 - 위탁의료기관 관리 : 어르신 181개소 , 어린이 134개소, 임신부 84개소 - 예방접종 및 관리 : 37,674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000	5,748	-	251	
2020년	6,000	4,784	-	1,216	
2021년	6,700	349	-	6,35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신소연	전화	5484
-----	-------	------------	-----	----------	----	------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P - 617~61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민간위탁의료기관 129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중증 사망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4,622	-	24,622	20,352	△4,270	
국 비		24,622		24,622	20,352	△4,270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실시 민간위탁의료기관 129개소에 화이자 희석액 배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1항 제1호
근거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화이자 백신은 생리식염주사액을 주입·희석하여 접종(백신 1바이알 당 희석액 1앰플 사용)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화이자 백신)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주사액 지원
- 질병관리청에서 위탁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 수량에 따라 생리식염주사액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307-01 의료 및구료비	소계 = 20,352	
		· 생리식염주사액 구입 1,000원 * 20,352개 = 20,352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사업지침 시달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2.01. ~ 12. : 코로나19 화이자 위탁의료기관 희석액 배부 및 접종 시행
- 2022.12. : 사업 집행 결과보고

□ 최근 추진실적

○ 최근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 위탁의료기관 계약 완료: 136개소 - 133개소 중 화이자 백신 접종 신청 기관 129개소	11.8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24,622	11,947	-	12,67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이미나	전화	5486
-----	-------	------------	-----	----------	----	------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신규)(P - 61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398,199건(코로나19 예방접종 부스터샷)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중증사망 및 돌파감염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	-	7,733,028	-	-
국 비					3,866,514		
도 비					1,159,954		
시 비					2,706,56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1,2항
근거내용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본접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접종효과 저하 우려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돌파감염 예방 등을 위해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함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추가접종 시행 권고(“21.8.25.)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21.10.1)
- 경기도 질병정책과-42334(2021.10.18.)호에 의거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7-01 의료 및구료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9,420원*398,199건 = 7,733,028	

## □ 사업 추진계획

### ○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지침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 2022.12. : 사업 집행 결과보고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서화정	전화	8301
-----	-------	------------	-----	----------	----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체))(P - 618)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67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5,000	40,000	40,000	-	565,290	525,29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0	40,000	40,000		565,290	525,29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보건사업과-16060(2019.9.18.)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관련 계획 결재
- 김포시 보건사업과-16375(2019.9.23.)호 사회보장제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협의 요청
-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51(2020.2.4.)호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 완료 통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를 김포시 전 출생아로 확대 실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대상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대상 : 김포시 전출생아
  - 내용 :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해 주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추계산식

- 2018~2020 평균 출생아 수 3,300명 기준
- 타 지자체 기시행기관 평균 지원율 45% 기준으로 추정

* 추정인구 3,300명 중 쌍생아 비율 1.5%	
- 3,250명(단태아)*0.45(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추정치)*0.45%(타지자체 평균지원율) ÷660명	
- 50명(쌍태아)*0.45(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추정치)*0.45%(타지자체 평균지원율) ÷10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660명*831,000원 (단태아/지원금 평균) = 548,460 - 10명*1,683,000원(쌍태아/지원금 평균) = 16,830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2. : 대상자 접수 및 지원, 사업비 예탁 및 관리
- 2022.1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34명	
2020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6명	
2021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0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5,000	45,000	-	-	
2020년	15,000	15,000	-	-	
2021년	40,000	40,000	-	40,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2021년 국비지원 산모신생아지원사업에 시비사업 대상자가 포함되어 예산 미집행, 반납 예정

- 국비지원 사업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출산가정
- 시비사업 대상자 : 김포시 거주 1년 이상이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6급 임은영	전화	5482
-----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명변경)(P - 61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000명(예산대비 목표인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도움 인력) 지원으로 엄마의 건강한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574,529	1,507,400	1,507,400	-	1,507,400	-	
국 비	1,102,129	1,055,000	1,055,000			△1,055,000	
도 비					1,055,000	1,055,000	
시 비	472,400	452,400	452,400		452,4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자치단체 전환사업(기능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변경(건강증진과-18652(2021.10.18.))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근거내용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쌍생아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해 주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507,400원*1,000명 = 1,507,4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12. : 사업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약 및 관리, 건강관리사 지원
- 2022.12. : 사업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885명)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924명)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993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40,000	866,804	-	173,196	
2020년	1,574,529	1,265,199	-	309,330	
2021년	1,507,400	1,222,633	-	284,76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6급 임은영	전화	5482
-----	-------	------------	-----	----------	----	------

# (출산장려사업 운영) (P - 618~61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83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29,526	1,790,335	1,790,335	-	1,483,939	△ 306,396	
국 비							
도 비							
시 비	1,029,526	1,790,335	1,790,335	-	1,483,939	△ 306,396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수 감소(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보험 종료되어 기존 등록 대상 아동만 만4세까지 지원)로 2022년 신생아 보험 계약금액 감소 예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근거내용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출산축하금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신생아보험 지원
  - 출산축하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신생아 보험 : 출산축하금 대상 중 셋째아 이상에게 만 4세까지 신생아보험 지원('20.7.1 이전에 출생한 대상에 한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출산장려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 혜금	○ 출산축하금 지급(둘째아 이상) : 1,000,000원*1,370명 = 1,370,000	
		○ 신생아 보험료 지원(462명) - 18.08.09~19.08.08출생아(4세) : 202,559원*248명 = 50,234,620원 - 19.08.09~20.06.30출생아(3세) : 297,681원*214명 = 63,703,760원  소계 = 1,483,939	

##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출산장려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홍보 및 추진(연중 사업 안내, 접수, 지급)
- 2022.12. : 출산장려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출산축하금(첫째, 둘째아): 2,549명 / 127,450천원 · 출산축하금(셋째아 이상): 289명 / 289,000천원 · 신생아 건강보험: 1,357명/ 238,017천원	
2020년	· 출산축하금: 2,322명 / 724,100천원 · 신생아 건강보험: 1,080명 / 163,133천원	(20.3.25 조례 개정) 지원기준 변경 - '20.7.1.이전 출생아: 첫째·둘째 5만원, 셋째아부터 100만원+신생아 보험 - '20.7.1.이후 출생아: 둘째아부터 100만원 (첫째아 지원 및 보험 중단)
2021년 (10.31.일 기준)	· 출산축하금: 1,360명 / 1,334,350천원 · 신생아 건강보험: 692명 / 199,461천원	※ 2021년 신생아 보험료 증가 사유: 선천성 이상아 수술비 지급 건수 증가로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료 상승

###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07,955	654,467	-	153,487	
2020년	1,029,526	887,234	-	142,292	
2021년	1,790,335	1,533,811	-	256,524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임신축하금 지원) (p - 61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3,12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임신축하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경제 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2,150,000</b>	<b>1,800,000</b>	<b>1,800,000</b>	<b>-</b>	<b>1,560,000</b>	<b>△240,000</b>	
국 비							
도 비							
시 비	2,150,000	1,800,000	1,800,000		1,560,000	△240,00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대비 임신축하금 87% 예산 요구, 추후 추경예산 반영 예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근거내용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녀출산가정에 임신·출산 축하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출산 시대의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임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임신축하금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임신축하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임신축하금 : 500,000원*260명*12월 = 1,560,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추진, 홍보
- 2022.12.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1. 13. :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li> <li>· 2019. 1. 14. : 임신축하금 지원계획 결재</li> <li>· 2019. 1. 16.~ 4.30.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사전컨설팅 요청 및 협의 완료</li> <li>· 2019. 5.1. ~ 7.30.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조정 및 입법예고(여성가족과 협의)</li> <li>· 2019.8.13.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원안가결(여성가족과 협의)</li> <li>· 2019. 9. 2 ~ 9. 11 : 제195회 임시회 조례개정안 상정(여성가족과)</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축하금 지원 : 4,161명/2,080,500,000원</li> </ul>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4. 19. : 임신축하금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으로 확대</li> <li>· 임신축하금 지원 : 3,328명</li> <li>· 임신축하금 예약 현황 : 1,800,000,000원</li> </ul>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2,150,000	2,080,500	-	69,500	
2021년	1,800,000	1,664,000	-	136,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김예슬	전화	5482
-----	-------	------------	-----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P - 61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입원 치료비용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지연·포기를 방지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6,000	60,000	48,000	12,000	102,000	42,000	
국 비	23,000	30,000	24,000	6,000	51,000	21,000	
도 비	11,500	15,000	12,000	3,000	25,500	10,500	
시 비	11,500	15,000	12,000	3,000	25,500	10,5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건강증진과-18938(2021.10.20.)호와 관련, 2022년 예산 증액 내시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 건수 증가(2019년 79명 → 2020년 90건 → 2021년 140건 이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회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로 체중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의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80,000원*150명 = 10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사업 계획 수립.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기관 대상 사업 홍보
- 2022.01. ~ 12. : 대상자 상담, 접수 및 의료비 지급
- 2022.12. : 사업 집행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79명	
2020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90명	
2021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74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8,200	52,364	-	35,836	
2020년	46,000	45,882	-	118	
2021년	60,000	36,145	-	23,85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P - 61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63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기록·유지를 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구입·배부
- 예산요구 현황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400	3,400	3,400	-	3,400	-	
국 비	1,700	1,700	1,700		1,700		
도 비	850	850	850		850		
시 비	850	850	850		85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9조
근거내용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신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기록·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자보건수첩 제작 비용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 2,077원*1,637개 = 3,4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02.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 02. : 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2022.01. ~ 12. : 모자보건수첩 배부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1,637명)	
2020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1,637명)	
2021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1,637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400	3,400	-	-	
2020년	3,400	3,400	-	-	
2021년	3,400	3,4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김예슬	전화	5482
-----	-------	------------	-----	----------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P - 619~62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400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일부) 지원으로 출산율 증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446,000</b>	<b>766,000</b>	<b>566,000</b>	<b>200,000</b>	<b>655,000</b>	<b>△111,000</b>	
국 비	223,000	383,000	283,000	100,000	-	△383,000	
도 비	111,500	191,500	141,500	50,000	491,000	299,500	
시 비	111,500	191,500	141,500	50,000	164,000	△27,5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246(2021.10..22.)호 관련, 2022년 예산액 감액 내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기능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대상으로 인공수정 총5회, 체외수정 시술비는 신선배아 총9회, 동결배아 7회에 한하여 지원
- 2021.11.15.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만45세 미만 대상자 시술비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
  -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비 지원 회차 각 2회씩 확대, 지원금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일괄 확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인공수정 시술비 : 200,000원*50명*3회 = 30,000	
		· 체외수정 시술비 : 500,000원*250명*5회 = 625,000	
		소계 = 655,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12. : 매월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 홍보
- 2022.12. : 사업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난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579건 / 인공수정 235건)	
2020년	난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486건/인공수정 133건/약제비 402건)	
2021년	난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876건/인공수정 197건/약제비 319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74,000	173,984	-	16	
2020년	420,000	347,329	-	72,671	
2021년	766,000	754,437	-	11,56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김예슬	전화	5482
-----	-------	------------	-----	----------	----	------

# (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P - 62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선천시 난청의 조기 발견과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으로 장애 및 후유증 최소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00	2,300	1,900	400	2,400	100	
국 비	500	1,150	950	200	1,200	50	
도 비	250	575	475	100	600	25	
시 비	250	575	475	100	600	2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선천시 난청 검사비 지원 건수 증가 (2020년 1건 → 2021년 4건)
- 선천시 난청 보청기 지원 범위 확대 (1인당 보청기 일측 지원 → 양측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회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 실시한 외래 선별 검사비(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 신생아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 중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신생아 청각 선별·확진 검사비 지원 : 50,000원*4명 = 200	
		· 신생아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2,200,000원*1명 = 2,200	
		<b>소계 = 2,400</b>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사업 계획 수립.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 사업 홍보
- 2022.01. ~ 12. : 대상자 상담, 접수 및 의료비 지급
- 2022.12. : 사업 집행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지원(건강보험 적용 전 검사 쿠폰 지급) : 55명(2018년 미지급분 포함) · 선천성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이후) : 1명	
2020년	· 선천성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 지원 : 1명(확진 검사비1) ·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0명	
2021년	· 선천성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 지원 : 4명(선별 검사비2, 확진 검사비2) ·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1명(심사 진행중)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9,200	2,215	-	26,985	
2020년	1,000	977	-	23	
2021년	2,300	323	-	1,97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P - 62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7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유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한 성장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4,364	46,000	46,000	-	70,000	24,000	
국 비	22,182	23,000	23,000		35,000	12,000	
도 비	11,091	11,500	11,500		17,500	6,000	
시 비	11,091	11,500	11,500		17,500	6,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8938(2021.10.2.)호 관련 2022년 예산 증액 내시
- 2021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중 특수 조제분유 지원 환아 증가 (2020년 : 6명 → 2021년 : 21명)  
 ※ 보건소 선천성 대사이상 등록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만 19세까지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 실시한 외래 선별 검사비(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분유 및 치료비(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50,000원*10명 = 500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갑상선) 지원 : 137,500원*40명 = 5,500	
		·선천성대사이상 조제분유 지원 : 800,000원*20명*4회(분기별) = 64,000	
		<b>소계 = 70,000</b>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사업 계획 수립. 산부인과·소아과 등 관련 의료기관 대상 사업 홍보
- 2022.01. ~ 12. : 대상자 상담, 접수 및 의료비·특수 조제 분유 지급
- 2022.12. : 사업 집행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1명/1건) -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29명/37건)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7명/28건)	
2020년	-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13명/14건)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13명/30건)	
2021년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3명/3건) -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12명/14건)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25명/58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2,600	62,369	-	10,231	
2020년	44,364	39,068	-	5,296	
2021년	46,000	34,898	-	11,10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P - 62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600	3,600	3,600	-	7,200	3,600	
국 비	1,800	1,800	1,800		3,600	1,800	
도 비	900	900	900		1,800	900	
시 비	900	900	900		1,800	9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246(2021.10.22.)호와 관련, 2022년 예산 증액 내시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 (2020년 : 3명 → 2021년 : 6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200천원)
- 청소년산모가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조산원 포함)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1,200,000원*6명 = 7,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 홍보, 대상자 상담 및 안내
- 2022.12. : 사업 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2명)	
2020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3명)	
2021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6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600	2,975	-	625	
2020년	3,600	1,717	-	1,883	
2021년	3,600	3,6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P - 620~6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2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71,400	70,000	52,000	18,000	72,000	2,000	
국 비	35,700	35,000	26,000	9,000	36,000	1,000	
도 비	17,850	17,500	13,000	4,500	18,000	500	
시 비	17,850	17,500	13,000	4,500	18,000	5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246(2021.10.22.)호와 관련, 2022년 예산 증액 내시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신청 증가(2019년 47,643천원 → 2020년 69,386천원 → 2021년 73,611천원 예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임신부 중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임신부에게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307-01 의료 및 진료비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360,000원 * 200명 = 7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사업 계획 수립.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 사업 홍보
- 2022.01. ~ 12. : 대상자 상담, 접수 및 의료비 지급
- 2022.12. : 사업 집행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50명)	
2020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250명)	
2021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51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8,000	47,643	-	20,356	
2020년	71,400	69,386	-	2,014	
2021년	70,000	48,964	-	21,03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P - 6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4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게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99,139	326,000	306,000	20,000	574,000	248,000	
국 비	199,569	163,000	153,000	10,000	287,000	124,000	
도 비	99,785	81,500	76,500	5,000	143,500	62,000	
시 비	99,785	81,500	76,500	5,000	143,500	62,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건강증진과-18938(2021.10.20.)호와 관련, 2022년 예산 증액 내시
- '20년도 사업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80% 다자녀·장애인 가구까지 확대)에 따른 대상자 수 지속적 증가  
- 2019년 523명 → 2020년 1,207명 → 2021년 1,547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저귀 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기저귀 지원
-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 기저귀 수급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지원 금액 : 기저귀 64천원/월, 조제분유 86천원/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410,000원 * 1,400명 = 574,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사업 계획 수립.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등 관련 기관에 사업 홍보
- 2022.01. ~ 12. : 대상자 상담, 접수 및 의료비 지급
- 2022.12. : 사업 집행결과 보고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325명	
2020년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207명	
2021년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547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8,000	170,278	-	137,722	
2020년	399,139	399,139	-	-	
2021년	326,000	326,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영유아건강검진 지원)(P - 6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60명(의료급여수급권 대상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 필요한 건강검진 수검 비용 지원으로 정상적인 성장발달 및 건강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757	3,150	3,150	-	3,820	670	
국 비	3,005	2,520	2,520		3,056	536	
도 비	376	315	315		382	67	
시 비	376	315	315		382	6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158(2021.10.22.)호 관련 2022년 예산 증액 내시
- 영유아 검진 수검 대상자 수 증가 : 103명(2020) → 169명(2021)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근거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 진단, 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횟수 : 총11회(일반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307-01 의료 및 진료비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23,875원*160명 =	3,8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02. : 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2022.01.~ 12. : 사업대상자 검진 독려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71명)	
2020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85명)	
2021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99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477	4,477	-	-	
2020년	3,757	3,757	-	-	
2021년	3,150	3,15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P - 6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를 위한 검사비 지원으로 장애 조기발견 및 후유증 최소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029	9,240	9,240	-	8,650	△590	
국 비	4,023	7,392	7,392		6,920	△472	
도 비	503	924	924		865	△59	
시 비	503	924	924		865	△59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근거내용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중간생략)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회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6세 미만 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 173,000원*50명 =	8,6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12. : 매월 신청자 접수 및 의료비 지급, 홍보
- 2022.12. : 사업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18명)	
2020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28명)	
2021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27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200	3,192	-	8	
2020년	5,029	4,934	-	95	
2021년	9,240	4,953	-	4,28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P - 62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60명(의료급여수급권 대상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 · 운영 비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250	1,250	1,250	-	1,250		
국 비	1,000	1,000	1,000		1,000		
도 비	125	125	125		125		
시 비	125	125	125		125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 1,250원 * 1,000개 =	1,2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 수립
- 2022.01.~ 12.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2022.12. : 사업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625개)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1,000개)	
2021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2,084개)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50	1,250	-	-	
2020년	1,250	1,250	-	-	
2021년	1,250	1,25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P - 62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확보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1,200	11,200	11,200		36,000	24,800	
국 비	5,600	5,600	5,600		18,000	12,400	
도 비	2,800	2,800	2,800		9,000	6,200	
시 비	2,800	2,800	2,800		9,000	6,2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246(2021.10.22.)호와 관련, 모자보건 보조인력 인건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인력 필요
- 8개월간의 인건비(1명), 6개월간의 인건비(1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계 =	36,00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 기본급 : 86,880원*167일*1명	= 14,508
		65,160원*124일*1명	= 8,079
		· 유급휴일수당 : 86,880원*45일*1명	= 3,909
		65,160원*35일*1명	= 2,280
		· 명절휴가비: 500,000*2명	= 1,000
· 4대보험료 등: 18,918,560원*13%*1명	= 3,636		
10,860,440원*13%*1명	= 2,58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인력 모집 공고(1차)
- 2022.05. : 인력 모집 공고(2차)
- 2022.01. ~ 12. : 난임부부지원사업 업무 및 그 외 모자보건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모자보건사업의 업무보조 인건비 1명	
2020년	모자보건사업의 업무보조 인건비 1명	
2021년	모자보건사업의 업무보조 인건비 1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200	10,536	-	664	
2020년	11,200	11,152	-	48	
2021년	11,200	10,534	-	66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김예슬	전화	5482
-----	-------	------------	-----	----------	----	------

# 첫만남 이용권(신규)(P - 62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2,87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생아 대상 200만원 바우처 제공을 통해 초기 양육비용을 절감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	-	5,742,000	5,742,000	
국 비					4,292,000	4,292,000	
도 비					435,000	435,000	
시 비					1,015,000	1,01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신규사업)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957(2021.9.9.)호 및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8026(2021.9.13.)호 관련 국도비 가내시 통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근거내용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 (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200만원을 출생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대상·방법·시기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 발표안에 따라 2022년부터 ‘첫만남 이용권’ 사업 신규 추진
- 사업내용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모든 영유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일시금)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첫만남 이용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영유아 첫만남 이용권 지급 : 2,000,000원*2,871명 = 5,74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 신설 홍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집행 협조 요청
- 2022.01.~12.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연중 접수 및 바우처 지급
- 2022.12. : 사업 정산 및 집행 결과 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김지선	전화	5487
-----	-------	------------	-----	----------	----	------

# (65세이상 고혈압, 당뇨 본인부담약제비 지원)(P - 62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4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고혈압, 당뇨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으로 지속적 치료를 도모하여 합병증 예방과 노인 만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6,400	50,400	90,000	△39,600	50,400	-	
국 비							
도 비							
시 비	86,400	50,400	90,000	△39,600	50,400		
기 타						자부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항 제7호, 제3항
근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li>- 제3항 :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li> </ul>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족지지체계의 감소와 경제력 미약으로 적기 적절한 치료관리가 어려운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대상 고혈압, 당뇨약제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속적 치료 유도로 합병증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만 65세 이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30일 기준 각 질병 당 3,000원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65세이상 고혈압, 당뇨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3,000원*1,400명*12월 = 50,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수립
- 2022.04. ~ 10. : 약국 청구자료 심사 및 약제비 지급
- 2022.11. ~ 12.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2,922명 / 11,341건	
2020년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2,322명 / 5,954건	
2021년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324명 / 4,042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8,000	107,695	-	305	
2020년	86,400	62,926	-	23,474	
2021년	50,400	42,971	-	7,429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5033
-----	-------	------------	-----	----------	----	------

# (노인 안 검진사업) (P - 62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5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고혈압·당뇨환자 대상 사전 안 검진을 통한 안질환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증진 도모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000	5,000	5,000	-	5,0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	5,000	5,000		5,000		
기 타							자부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제4항
근거내용	-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안 검진을 통한 녹내장, 백내장 및 실명 등의 안질환 조기 발견
- 만 5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안과 기본검사 비용 지급(1인당 10,000원 이하)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노인 안 검진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 안 검진비 지원 : 10,000원*500명 =	5,000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眼)검진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2. : 사업 추진
- 2022.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안 검진비 지원 : 500명	
2020년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안 검진비 지원 : 500명	
2021년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안 검진비 지원 : 500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000	4,991	-	9	
2020년	5,000	5,000	-	-	
2021년	5,000	5,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6급 이경희	전화	5031
-----	-------	------------	-----	----------	----	------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P - 62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909명(19세 이상 성인조사자 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9,466	69,466	69,466		69,472	6	
국 비	34,733	34,733	34,733		34,736	3	
도 비							
시 비	34,733	34,733	34,733		34,736	3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근거내용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항~④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지자체 단위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 운영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지역사회건강조사 회의 급식비 8,000원*11명*5회 = 440	
		· 지역사회건강조사 회의 간식비 3,000원*10명*2회 = 60	
		<b>소계</b> = <b>500</b>	
	307-05 민간위탁금	·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 : 68,972,000원 = 68,972	

**□ 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및 향후계획

- 2022.02 ~ 03. : 지역사회건강조사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 2022.05. : 민간위탁금 사업비 지급
- 2022.06. : 지역사회건강조사원 모집 및 면접, 사전교육
- 2022.08. ~ 10.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2022.09. :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조사자수 : 19세이상 성인 910명 - 조사지표 : 21개 영역 237문항, 170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2020년	- 조사자수 : 19세이상 성인 914명 - 조사지표 : 18개 영역 142문항, 121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2021년	- 조사자수 : 19세이상 성인 911명 - 조사지표 : 18개 영역 163문항, 124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2,562	62,314	-	248	
2020년	69,466	69,466	-	-	
2021년	69,466	69,466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6급 이경희	전화	5031
-----	-------	------------	-----	----------	----	------

# (만성질환예방관리(우수사례과정 운영비))(P - 62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의 우수건강지표 발굴을 위한 만성질환예방관리 전문가 양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1,960	1,960	-	1,960	-	
국 비		980	980		980		
도 비							
시 비		980	980		98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16조
근거내용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필요성 : 보건소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주요사업내용 : 우수건강지표와 보건사업과의 연관성 정리 및 효과분석, 지역 통계 활용 기법 이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만성질환예방관리 (우수사례과정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 만성질환예방관리 전문교육 : 1,960,000원*1명 = 1,9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교육대상 선발
- 2022.03. ~ 10. : 교육파견
- 2022.11. : 시도별 자체 평가대회 참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 만성질환예방관리(우수사례과정) 교육 수료 : 1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1,960	1,96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5033
-----	-------	------------	-----	----------	----	------

# (방문건강관리실 운영)(P - 62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량 : 3,278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화된 차량 교체에 따른 사고위험성 감소 및 원활한 방문건강관리업무 수행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개인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5,000</b>	<b>5,000</b>	<b>-</b>	<b>-</b>	<b>54,680</b>	<b>49,680</b>	
국 비					6,000	6,000	
도 비							
시 비	5,000	5,000			48,680	43,68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16390(2021.10.13.)호와 관련,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국비 지원
- 차량 노후(13년 운행) 및 동일 고장 현상으로 차량교체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위한 스마트폰 구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 제1항
근거내용	제7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5.) 1. 별표 1의 따른 차량의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근거내용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차량교체 필요성 : 차량노후화로 잦은 고장 및 안전성 우려
  - 구입일자 2008.09.03. / 운행기간 13년으로 운행 연한 초과(정수물품 승인완료 : 2021.10.)
- 스마트폰 활용으로 영상통화, ZOOM 교육 등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방문건강관리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방문보건차량 교체 구입 : 50,000,000원*1대 =	50,000
	201-02 공공운영비	· 단말기 및 통신요금 : 130,000원*3대*12월 =	4,680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수립
- 2022.01. ~ 11. : 사업 추진, 차량 및 단말기 구입
- 2022.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5,871가구, 재활장비대여 : 311건	
2020년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3,317가구, 재활장비대여 : 237건	
2021년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2,880가구, 재활장비대여 : 280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1,610	21,607	-	3	
2020년	5,000	4,990	-	10	
2021년	5,000	4,990	-	10	10.31.일까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5033
-----	-------	------------	-----	----------	----	------

# (암환자 지원사업(재가암환자관리))(P - 62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30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및 가족의 환자 간호 등에 따른 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250	5,250	5,250	-	5,250	-	
국 비	2,625	2,625	2,625			△2,625	
도 비					2,652	2,625	
시 비	2,625	2,625	2,625		2,62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 19307(2021.10.25.)호와 관련, 지방이양사업 전환되어 국고보조금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3조, 제12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재가암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 건강관리 및 심리지지와 상담, 의료물품(영양제, 특수영양식이 등) 지원, 지역의 보건·복지자원 연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암환자지원사업 (재가암환자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의료지원품 구입 · 영양제 : 8,400원*100명*4월 = 3,360 · 특수영양식이 : 26,250원*18명*4회 = 1,89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서 수립
- 2022.02. : 의료지원 물품 구입
- 2022.01. ~ 12.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530명, 건강관리 : 2,061회, 의료물품지원 : 145명	
2020년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310명, 건강관리 : 2,124회, 의료물품지원 : 200명	
2021년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307명, 건강관리 : 963회, 의료물품지원 : 255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998	8,998	-	-	
2020년	5,250	5,249	-	1	
2021년	5,250	5,245	-	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5033
-----	-------	------------	-----	----------	----	------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방문건강관리))(P - 62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3,000가구(등록관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연장
- 예산요구 현황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2,168	52,672	52,672	-	53,822	1,150	
국 비	26,084	26,336	26,336		26,911	575	
도 비							
시 비	26,084	26,336	26,336		26,911	57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299(2021.10.25.)호 2022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자체보조 가내시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근거내용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건강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의료비 절감
- 취약계층 발굴·등록, 기초건강 및 만성질환관리, 지역의 보건·복지자원 연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프로그램 재료, 사무용품 등 구입 : 250,000원*4회 = 1,000	
		·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 1,000원*4,654개 = 4,654	
	<b>소계 = 5,654</b>		
	307-01 의료및구료비	· 영양제 : 8,400원*400명*12월 = 40,320	
· 외용 소염진통제 : 2,000원*900명*4회 = 7,200			
· 황사마스크 : 500원*324명*4회 = 648			
		<b>소계 = 48,168</b>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수립
- 2022.02. ~ 12. :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 2022.12. : 결과보고 및 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방문등록관리 : 5,871가구, 건강관리 : 14,597회, 의료물품 지원 : 3,232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2,960건/ 보건소 외 3,234건 · 장애인, 독거노인 사회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 76회/ 68명	
2020년	· 방문등록관리 : 3,191가구, 건강관리 : 15,072회, 의료물품 지원 : 5,061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2,351건/ 보건소 외 2,817건 ·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대응 건강취약계층 홍보물품 배부 : 4,861명	
2021년	· 방문등록관리 : 2,880가구, 건강관리 : 8,413회, 의료물품 지원 : 5,305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588건/ 보건소 외 1,538건 ·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대응 건강취약계층 홍보물품 배부 : 1,069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7,188	84,936	-	2,252	
2020년	52,168	52,167	-	1	
2021년	52,672	52,668	-	4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이경희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5033
-----	-------	------------	-----	----------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P - 624~62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사우중로 73번길 52
- 사업규모 : 980명(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약 복용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악화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193,000</b>	<b>238,310</b>	<b>238,310</b>		<b>295,746</b>	<b>57,436</b>	
국 비	96,500	119,155	119,155		-	△119,155	
도 비	14,475	17,873	17,873		<b>170,054</b>	152,181	
시 비	82,025	101,282	101,282		<b>125,692</b>	24,41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433(2021.10.27.)호 관련, 2022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자체보조 가내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회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 악화 방지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대 상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김포시 거주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매치료관리비(980명) = 295,746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 심화방지,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 2010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시작(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2010년 11월 : 보건소장 인정자(CDR1점이하,GDS5단계이하,초로기환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대지원
  - 2013년 : 평균소득 100%이하 지원 변경
  - 2016년 : 지원대상자의 정기소득기준 조사 매 2년마다 실시
  - 2017년 : 평균소득 120%이하 지원 변경(단, 3인가족 평균소득 100%유지)
  - 2019년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단, 3인 가족 평균소득 120% 변경)

### ○ 지원절차

- 대상자 :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
- 보건소 : 치매치료관리비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통보 및 치료관리비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에게 매월 치료비 지급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실인원/지원건수)	비고
2019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902명 / 3,454건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975명 / 4,169건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956명 / 4,181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45,078	145,078	-	-	
2020년	193,000	193,000	-	-	
2021년	238,310	238,31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김한나	전화	5804
-----	-------	------------	-----	----------	----	------

# (치매안심센터 운영)(P - 625~62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사우중로 73번길 52
- 사업규모 : 1개소(698.27㎡), 60세 이상 인구 67,005명(고촌읍, 동지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53,265	285,831	285,831		287,644	1,813	
국 비	202,612	228,665	228,665		230,115	1,450	
도 비	7,598	8,575	8,575		8,629	54	
시 비	43,055	48,591	48,591		48,900	30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9433(2021.10.27.)호 관련, 2022년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자체보조 가내시
-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환자 추정수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조기검진·돌봄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치매예방·조기검진·돌봄 등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 및 가족 부양부담 경감
- 치매안심센터 청사 공공운영 및 전 시민 대상 치매인식개선 사업 추진
- 치매고위험군 및 정상노인 대상 치매예방관리 교육 홍보로 치매발생 감소 또는 진행 지연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직원유니폼 동·하절기 : 80,000원*14명*1회 = 1,120	
		· 협의체운영 참석수당 : 80,000원*8명*2회 = 1,280	
		· 차량임대료 : 500,000원*2대*12월 = 12,000	
		· 전산소모품(토너 등)구입 : 290,000원*12개월 = 3,480	
		· 정수기임대료 및 관리 : 40,000원*2대*12월 = 960	
		· 비데임대료 및 관리 : 25,000원*3대*12월 = 900	
		· 치매가족교실 재료구입 : 150,000원*3회*12월 = 5,400	
		· 가족카페운영 재료구입 : 100,000원*4회*12월 = 4,800	
		· 인지프로그램 운영재료구입 : 5,000원*300회*12월 = 18,000	
		· CERAD-K전자검사 앱구입 : 6,500원*1,000명 = 6,500	
		· 치매선별검사지 등 인쇄 : 30원*50,000매 = 1,500	
		· 사업홍보배너 및 현수막 : 100,000원*20개 = 2,000	
		· 조기검진, 예방홍보 리플렛 : 1,500원*3종*2,000개 = 9,000	
		· 치매홍보 탁상달력 : 3,000원*1,500개 = 4,500	
		· 치매가이드 북 구입 : 5,000원*1000매 = 5,000	
	· 치매검사용 음성 증폭기 구입 : 290,000원*10개 = 2,900		
	· 치매극복선도학교·단체 운영 : 2,000,000원*3개소 = 6,000		
	· 배회감지기 구입 : 159,000원*30대 = 4,770		
	· 치매관리 홍보 물품 구입 : 5,000원*2,000개 = 10,000		
	· 인지강화키트 구입 : 50,000원*200개 = 10,000		
		<b>소계 = 110,110</b>	
	201-02 공공운영비	· 관리비(수도,전기,용역관리비) : 1,500,000원*12월 = 18,000	
· 조기 검진 등 우편발송 : 500,000원*4분기 = 2,000			
· TV 유선방송, 인터넷 사용료 : 100,000원*12월 = 1,200			
· 센터시설, 장비유지관리 : 200,000원*12월 = 2,400			
· 관용차량 유류비 : 100,000원*2대*12월 = 2,400			
· 점보티슈·폐이퍼 타올 : 100,000원*12월 = 1,200			
· 환경정비 관리용품 : 80,000원*12월 = 960			
· 무인경비시스템사용 : 150,000원*12월 = 1,800			
		<b>소계 = 29,960</b>	
	201-03 행사운영비	· 치매극복의날 행사 운영 : 5,000,000원*1회 = 5,000	
· 쉼터 프로그램 행사,문화 체험등 : 350,000원*2회 = 700			
		<b>소계 = 5,700</b>	
	202-01 국내여비	· 치매안심센터 사업추진 여비 : 100,000원*11명*12월 = 13,2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 1,000원*20명*60회 = 1,200	
· 가족카페운영 : 150,000원*12월 = 1,800			
· 행사운영 다과 및 급식비 : 293,000원*2회 = 586			
		<b>소계 = 3,586</b>	
	301-12 기타보상금	· 인지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 70,000원*8회*12개월 = 6,720	
· 가족교육 강사비 : 70,000원*4회*2분기 = 560			
· 협력의사 수당 : 1,372,000원*2명*12월 = 32,928			
		<b>소계 = 40,208</b>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매 감별검사비 : 80,000원*200명 = 16,000	
· 조호물품(성인용기저귀 등 9종) : 5,700,000원*12월 = 68,400			
· 검사 의료 소모품(란셋 등) : 40,000원*12월 = 480			
		<b>소계 = 84,880</b>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 2017. 08. 30. : 김포시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보고
- 2017. 11. ~ 2018. 05. : 건물 매입, 리모델링
- 2018. 05. 30. : 김포시치매안심센터 개소
- 2019. 09. 23. : 북부보건과 치매관리팀 신설(북부권 경증치매 쉼터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

### ○ 향후계획

- 2022.01. ~ 02. : 사업계획서 수립 및 홍보
- 2022.02. :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운영 및 업무협의
- 2022.01. ~ 12. : 치매통합관리 사업 추진  
(치매조기검진, 상담, 환자등록관리, 예방인지 프로그램운영,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 2022.11. : 정부합동평가 '지역사회치매관리율' 자료 작성
- 2022.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12,092명 / 환자 등록 관리: 2,006명, / 진단감별검사: 696명·310명</li> <li>·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26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8종,12,430건(실인원 1,000명)</li> <li>·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90명 / 지문등록: 336명</li> <li>·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454회(3,993명)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프로그램: 126회(1,158명)</li> <li>· 정상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138회(1,809명)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8,683명</li> <li>· 치매가족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66회(598명)</li> <li>·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및 치매 파트너 양성(1개소 / 806명)</li> <li>·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하성면 전류리 (프로그램 26회/464명)</li> </ul>	치매관리사업 (김포시 전체)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2,017명 / 환자 등록 관리: 1,455명 / 진단감별검사: 292명·190명</li> <li>·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908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2종, 7,886건(실인원 755명)</li> <li>·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130명 / 지문등록: 124명 / 배회감지기 지원: 25명</li> <li>·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84회(914명)</li> <li>· 치매고위험군, 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24회(161명)</li> <li>· 치매가족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15회(124명)</li> <li>·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3개소), 치매파트너 양성: 588명</li> </ul>	남부권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 2,020명 / 환자 등록 관리: 1,623명 / 진단감별검사: 287명·99명</li> <li>·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956명 /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 10종, 2,485건(실인원 289명)</li> <li>·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배회 인식표 발급 29명 / 지문등록: 141명 / 배회감지기 지원: 43명</li> <li>· 경증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37회(124명)</li> <li>· 치매 고위험군, 정상군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59회(251명)</li> <li>· 치매 가족 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숨은마음찾기 프로그램 운영: 26회(200명)</li> <li>· 치매 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2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1개소), 치매파트너: 553명, 파트너플러스:160명</li> </ul>	남부권 (10.31 기준)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09,135	489,596	-	119,539	
2020년	253,265	248,495	-	4,770	
2021년	285,831	214,904	-	70,92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바다윗 간호8급 김한나	전화	5233 5804
-----	-------	------------	-----	----------------------	----	--------------

# (치매공공후견 지원)(P - 62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사우중로 73번길 52
- 사업규모 : 치매공공후견인 2명(피후견인 3명 지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존엄성 보장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700	4,898	4,898	-	6,000	1,102	
국 비	2,164	3,918	3,918		4,800	882	
도 비	80	147	147		180	33	
시 비	456	833	833		1,020	18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20631(2021.11.12)호 관련, 2022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자체보조 가내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근거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후견심판 청구 등 절차 비용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치매노인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사무처리

## □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치매공공후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심판절차비용 지원 : =	300
	301-12 기타보상금	·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 =	5,7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
  - 지원절차 : 신청(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 → 후견대상자 선정(치매안심센터는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 선정) → 후견심판 청구(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 → 후견심판 결정 → 후견활동 시작
  -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20만원/1인, 월30만원/2인
  - 공공후견인 역할
    - 통장 등 재산관리
    - 관공서 등 서류발급 및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 병원진료, 약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공공후견 심판결정 : 2건(공공후견 활동 2명, 피후견인 지원 3명)	
2020년	- 공공후견 심판결정 : 1건(공공후견 활동 2명, 피후견인 지원 3명)	
2021년	- 공공후견 심판결정 : 0건(공공후견 활동 2명, 피후견인 지원 3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359	1,176	-	183	
2020년	2,700	2,636	-	64	
2021년	4,898	4,763	-	13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박다윗	전화	5233
-----	-------	------------	-----	----------	----	------

---

#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

북부보건과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북부보건과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전기요금 등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31,200천원(집행률 100%)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8,491천원(집행률 66.3%) - 시설비(청사 리모델링 등): 20,912천원(집행률 95.1%) - 자산취득비(냉장고, 책상, 의자 등): 68,397천원(집행률 99.9%)	
2020년	- 사무관리비(임차료, 기자재, 소모품 등): 45,653천원(집행률 92.7%)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21,212천원(집행률 72.1%) - 자산취득비(차량 등): 43,058천원(집행률 95.8%)	
2021년	- 사무관리비(임차료, 기자재, 소모품 등): 47,764천원(집행률 95.5%)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22,100천원(집행률 84.4%)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34,400	129,000		5,400	
2020년	123,610	109,923		13,687	
2021년	76,200	69,864		6,33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보건관리팀장 최계숙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혜인	전화	4173
-----	-------	------------	-----	------------	----	------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P - 63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통진읍 김포대로 2225, 통진메디칼타워 4층
- 사업규모 : 만성질환 유소견자 만 19세이상 ~ 60대 지역주민 17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간 ·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앱을 활용한 코칭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33,250</b>	<b>9,810</b>	<b>9,810</b>		<b>9,200</b>	<b>△610</b>	
국 비							
도 비							
시 비	33,250	9,810	9,810		9,200	△61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근거내용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으나 경제활동 또는 거리적 접근성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에게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의 사전·사후 건강위험도 비교 분석을 위한 혈액검사, 신체 계측 및 체성분검사 실시
-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모바일헬스프로그램을 통한 균형식이, 신체활동 등 비대면 건강상담 및 교육실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합 계		9,200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용 리플렛 및 교육자료 제작 = · 운동 소모품(아령, 밴드 등) 구입 =	2,000 1,600	3,600
	307-01 의료및구료비	· POCT 검사 소모품 : 8,000원*200건*3회 = · 알콜솜, 란셋 등 소모품 3종 : 200,000원*4회 =	4,800 800	5,6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계획서 수립
- 2022. 02. ~ 2022. 04. :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 2022. 02. ~ 2022. 10. : 대상자검진 및 전문상담, 모바일앱 모니터링
- 2022. 11. ~ 2022. 12. : 사업평가 및 추후 관리서비스 제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등록 : 172명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 326명 - 건강/영양/운동 전문가 집중상담 : 2,495건	
2021년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등록 : 176명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 362명 - 건강/영양/운동 전문가 집중상담 : 2,910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3,250	32,580		670	
2021년	9,810	9,139		67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보건관리팀장 최계숙	담당자	의료기술6급 주일국	전화	4172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모바일헬스케어 사업(국비)		합 계	77,192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86,880원 * 2명 * 207일 = 35,968 · 유급휴일수당 86,880원 * 2명 * 57일 = 9,905 · 명절휴가비 500,000원 * 2명 * 1회 = 1,000 · 시간외근무수당 16,290원 * 2명 * 24시간 = 782 · 4대 보험료 47,654,560원 * 13% = 6,195	53,850
	201-01 사무관리비	· 체중계, 활동량계, 운동소모품 등 5종 = 22,067	22,067
	307-01 의료및구료비	·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검사 소모품 5종 = 1,275	1,275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추진계획 수립, 전문인력 채용
- 2022. 02. ~ 2022. 04. :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 2022. 02. ~ 2022. 10. : 대상자검진 및 전문상담, 모바일앱 모니터링
- 2022. 11. ~ 2022. 12. : 사업평가 및 추후 관리서비스 제공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등록 : 172명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 326명 - 건강/영양/운동 전문가 집중상담 : 2,495건	
2021년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등록 : 176명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 362명 - 건강/영양/운동 전문가 집중상담 : 2,910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3,780	39,036		4,744	
2021년	80,550	67,331		13,219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보건관리팀장 최계숙	담당자	의료기술6급 주일국	전화	4172
-----	-------	------------	-----	------------	----	------

#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P - 63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읍면 경로당 등 18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성과 체력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79,500</b>	<b>20,160</b>	<b>37,860</b>	<b>△17,700</b>	<b>37,500</b>	<b>17,340</b>	
국 비							
도 비							
시 비	79,500	20,160	37,860	△17,700	37,500	17,34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도 코로나19관련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속에 따른 운동사업 중단으로 3회 추경에 감액하였으나 2022년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증액하고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근거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고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필요
- 운동 강사가 주 1~2회 운동 교육 실시 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생활습관 유도
- 프로그램 시작(7월)과 종료 시기(12월) 혈압혈당 등 건강 체크로 대상자 건강현황 비교 파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합 계		37,500
	301-12 기타보상금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강사비 · 50,000원 *10명*75회 =	37,500	37,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사업계획 수립,
- 2022. 06. : 강사 채용, 운동 프로그램 참여마을 신청 접수 및 선정
- 2022. 07. ~ 2021. 12. : 운동프로그램 실시 및 혈압·당뇨 등 건강체크, 건강교육 실시
- 2022. 12.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평가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코로나19로 사업중단 예산반납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잠정중단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750	750	0	0	
2021년	20,160	0	0	20,16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건강생활팀장 이석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석창	전화	4181
-----	-------	------------	-----	------------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P - 634~63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출생아 3,61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 위 치 : 통진읍 김포대로 2225, 통진메디컬타워 4층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b>계</b>	<b>1,571,000</b>	<b>1,791,000</b>	<b>1,571,000</b>	<b>220,000</b>	<b>1,806,000</b>	<b>15,000</b>	
국 비							
도 비	1,099,700	1,253,700	1,099,700	154,000	1,264,200	10,500	
시 비	471,300	537,300	471,300	66,000	541,800	4,5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가내시 사전통보(경기도 건강증진과-19246(2021.10.22.))
- 경기도 거주 1년 조건 폐지 및 신도시 건설 젊은 층 유입에 따른 대상자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산가정 지원
- 모유수유 용품, 산모신생아 용품, 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합 계	1,806,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0,000원 * 3,612명 = 1,806,000	1,80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월 ~ 12월
- 매월 신청자 접수 : 읍·면·동 협조
- 대상자 자격 및 중복청구 여부 확인
- 자격 및 본인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1인당 50만원
- 사업 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500,000원 * 2513명	
2020년	500,000원 * 3,009명	
2021년	500,000원 * 2,910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421,500	1,256,500	0	165,000	
2020년	1,571,000	1,504,500	0	66,500	
2021년	1,791,000	1,455,000	0	336,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건강생활팀장 이석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석창	전화	4181
-----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북부지역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합 계	200,096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단기섭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86,880원 * 165일 = 14,335 · 유급휴일수당 86,880원 * 46일 = 3,997 · 명절휴가비 500,000원 * 1회 = 500 · 교육비, 여비 등 60,000원 * 8월 = 480 · 피복비 100,000원 = 100 · 4대 보험료 18,831,680원 * 13% = 2,448	21,860
	201-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및 사업 차량 임차료 = 19,408 · 인지프로그램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 29,500 · CREAD-K전자검사 앱구입 : 6,500원 * 400명 = 2,600 ·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 24,866	76,374
	201-02 공공운영비	· 조기검진 안내문 등 우편요금 : 2,400,000원 * 2회 = 4,800 · 관용차량 유류 및 관리 : 100,000원 * 2대 * 10월 = 2,000	6,800
	201-03 행사운영비	· 치매극복의날 행사운영 : 2,000,000원 * 1회 = 2,000 · 인지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체험비 : 25,000원*10명*20회 = 5,000	7,000
	202-01 국내여비	· 치매관리사업 추진 여비 : 120,000원 * 7명 * 12월 = 10,080	10,08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 1,000원 * 20명 * 100회 = 2,000 · 가족카페 운영 : 70,000원 * 12월 = 840 · 행사운영 다과 및 급식비 : 150,000원 * 4회 = 600	3,440
	301-12 기타보상금	· 협력의사 수당 : 1,372,000원 * 12월 = 16,464 · 인지프로그램 등 강사비 : 70,000원 * 20회 * 10월 = 14,000	30,464
	307-01 의료 및 구료비	· 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등 9종) = 43,758 · 검사 의료 소모품 = 320	44,078

## □ 사업 추진계획

### ○ 향후계획

- 2022.01. ~ 2022.02.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홍보
- 2022.02. ~ 2022.03.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22.01. ~ 2022.12. : 치매통합관리 사업추진  
(치매 조기검진, 환자 등록관리, 예방프로그램 및 1:1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사업 등)
- 2022.11. : 정부합동평가 자료 작성
- 2022.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612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769명 / 진단감별검사: 43명·12명</li> <li>·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0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440건 131명</li> <li>·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12명 / 지문등록: 10명</li> <li>·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35회 87명</li> <li>·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12회 168명</li> <li>·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500명</li> <li>·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하성면 전류리(프로그램 8회 123명)</li> </ul>	2019.9.23. ~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1,152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854명 / 진단감별검사: 106명·38명</li> <li>·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8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9종, 1,890건, 405명</li> <li>·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42명 / 지문등록: 44명 / 배회감지기: 25명</li> <li>·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73회 291명</li> <li>· 환자 가족교육(헤아림 가족교실): 8회 25명 / 돌봄부담분석 및 가족상담: 29회</li> <li>·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725명</li> <li>·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통진읍 동을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 등</li> <li>-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경로당 내부게시판, 화장실 안심벨, 치매예방수칙 안내판 설치, 인식개선 마을 벽화사업 등)</li> <li>- 안심마을 특화사업 추진(안심리더 양성 교육 9회 78명)</li> </ul> </li> </ul>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946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876명 / 진단감별검사: 117명·45명</li> <li>·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35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9종, 1,118건, 221명</li> <li>·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58명 / 지문등록: 73명 / 배회감지기 : 58명</li> <li>·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84회 514명</li> <li>·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30회 65명</li> <li>·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1,164명</li> <li>·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하성면 마곡리 (7기 지정한 안심마을: 양촌 고다니8단지, 하성면 전류리, 통진읍 동을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결성</li> <li>- 치매친화적 환경조성(경로당 내부게시판, 치매예방수칙 안내판 설치, 인식개선 마을 벽화사업 등)</li> </ul> </li> </ul>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68,948	163,749		5,199	
2021년	205,004	158,748		46,25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치매관리팀장 신수정	담당자	간호8급 이정민	전화	4202
-----	-------	------------	-----	----------	----	------

# (북부권 방문건강관리사업) (P - 63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규모 : 1,80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b>계</b>					<b>3,500</b>	<b>3,500</b>	
국 비							
도 비							
시 비					3,500	3,50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본 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자산취득은 불가하여 시비 편성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테블릿 PC 구입 : 700,000원 × 5대 = 3,500천원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제3조(책임) 제1항/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5호
근거내용	-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제5호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테블릿 PC(11인치) : 내구 년한 / 4년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개인정보 동의서 현장 작성 및 등록
- 방문간호시 현장에서 건강서비스 내역 조회 및 기록관리
- 건강면접 조사표 입력, 질환관리 교육자료 활용(1:1 현장교육)
-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유투브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북부권 방문건강관리사업		합 계		3,5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대상자 관리용 태블릿 PC : 700,000원*5대 =	3,500	3,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03 : 사업계획서 수립
- 2022.02 : 태블릿PC 구입
- 2022.01 ~ 2022.12 :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 및 교육 활용
- 2022.10 : 시군 종합평가
- 2022.11 ~ 2022.12 : 방문보건사업 경기도 및 정부합동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방문등록가구/서비스 건 : 2,429가구/3,255건, 자원연계 729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2,670명	2019.9.23 ~
2020년	방문등록가구/ 서비스 건 : 2,126가구/13,245건, 자원연계1,586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1,355명(8,366건) 주민 주도형 건강돌봄 공동체 운영 : 2개소(월곶1, 하성1) 6회 81명, 지역자원활용(장소 협조 등)	
2021년	방문등록가구/ 서비스 건 : 2,135가구/4,680건, 자원연계 1,824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2,308명(15,280건) 우울증 예방 원예프로그램 운영 : 실인원 30명/연인원 315명(2주/1회 8개월 과정)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방문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6급 고종중	전화	4191
-----	-------	------------	-----	----------	----	------

# (북부권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방문건강관리) (P - 636~63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80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7,200	37,500	37,500		37,500	0	
국 비	18,600	18,750	18,750		18,750		
도 비							
시 비	18,600	18,750	18,750		18,75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제3조(책임) 제1항/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5호
근거내용	-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제5호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북부권 의료취약계층 및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건강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주요사업내용
  - 취약계층 발굴 및 등록관리, 기초 건강 및 만성질환, 폭염·한파 대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소생활권 주민 건강돌봄 및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 재난대비(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건강관리, 지역의 보건·복지자원 연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		합 계	37,500
	201-01 사무관리비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 사무용품, 피복비 등 구입 : 250,000원*4회 = 1,000 · 방문사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 1,100원*3,000개 = 3,300	4,300
	201-02 공공운영비	◎ 비대면 방문건강 대상자 관리 · 휴대폰 요금 75,000원 * 12월 = 900	900
	307-01 의료및구료비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지원품 구입 · 영양제 등 2종 : 6,270원 * 300명 * 4회*3월 = 22,572 · 외용 소염진통제 : 2,000원 * 700명*4회 = 5,600 · 황사마스크 : 1,000원*928명 = 928 · 영양식이 : 20,000원*160명 = 3,200	32,3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03. : 사업계획서 수립
- 2022.01. ~ 2022.12. : 분기별 건강관리 물품 구입 및 대상자 발굴 및 방문서비스 제공
- 2022.10. : 시군 종합평가
- 2022.11. ~ 2022.12. : 방문보건사업 경기도 및 정부합동평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방문등록가구/서비스 건 : 2,429가구/3,255건, 자원연계 729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2,670명	
2020년	방문등록가구/ 서비스 건 : 2,126가구/13,245건, 자원연계1,593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1,355명(8,366건)	
2021년	방문등록가구/ 서비스 건 : 2,135가구/4,680건, 자원연계1,824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2,308명(15,280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7,200	37,197		3	
2021년	37,500	37,499		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방문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6급 고종중	전화	4191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 편성된 사업 중 아래 2개 사업으로 구성됨

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②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생활습관 질병 발생에 따른 병원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활 습관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악화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필요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합 계	53,400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 통합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 기본급 76,020원 * 146일 = 11,099 · 유급휴일수당 76,020원 * 39일 = 2,965 · 명절휴가비 500,000원 * 1명 * 1회 = 500 · 4대 보험료 14,563,700원 * 13% = 1,893	16,457
	201-01 사무관리비	◎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 ·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홍보지 제작 : 1,250원*2,000부 = 2,500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 3,161원*3,000부 = 9,483	11,983
		·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 20,000원*10명*10회*2개소 = 4,000 · 재활사업 홍보물 등 제작 : 2,500원*2,000개 = 5,000	9,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간담회 운영 = 400 · 건강생활사업 간담회 급식비 : 8,000원 *25명*2회	400
	301-12 기타보상금	◎ 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 강사비 = 1,600 · 재활프로그램 강사비 : 80,000원*10회*2개소	1,600
	307-01 의료 및 구료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검사 소모품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검사용품 : 4,000원*750명 = 3,000 · 심뇌혈관질환 관리 검사용품 등 : 2,850원*2,000명 = 5,700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의료지원품 · 외용 소염진통제 : 2,000원 * 600명*4회 = 4,800 ◎ 재활운동 및 치료사업 검사 소모품 · 혈당 및 지질 검사 소모품 등 : 5,000원*92명 = 460	13,960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02. : 사업계획서 수립
- 2022.03. : 사업대상 선정 및 강사 채용
- 2022.03. ~ 2022.12. : 각 분야별 물품구입 및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 2022.11. ~ 2022.12.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및 재활사업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 고혈압당뇨 이동교실 32회 639명 - 지역사회재활관리사업 : 장애인 등록가구 : 564명 /771건	
2020년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 고혈압당뇨 관련 교육(이동교실, 표준화사업) : 57회 87명 - 지역사회재활관리사업 : 장애인 등록가구 : 621명 /3,542건 재활 프로그램 운영 : 6회/81명	
2021년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 당뇨병 자가관리 상담:16회 60명(연인원), 고혈압당뇨병 표준화사업 : 39회 77명(실인원) - 지역사회재활관리사업 : 장애인 등록가구 : 595명 /1,248건 재활 발관리 프로그램 운영 : 15회/57명 재활운동교실(청춘두베로) : 41회 383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5,310	32,729		2,581	
2021년	36,460	35,389		1,07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건강생활팀장 이석창 방문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석창 간호6급 고종중	전화	4181 4191
-----	-------	--------------------------	-----	------------------------	----	--------------

# (북부권 암환자 지원사업(재가암환자관리) (P - 63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12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 및 가족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예산요구 현황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748	3,748	3,748		3,748	0	
국 비	1,874	1,874	1,874			▽1,874	
도 비					1,874	1,874	
시 비	1,874	1,874	1,874		1,874		
기 타							자부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항,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호
근거내용	-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호 :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2년부터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은 2단계 전환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국고보조금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용품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내용 : 기초건강관리 및 심리지지와 상담, 의료물품(특수영양식이, 인공장루 등) 지원, 지역의 보건·복지자원 연계

**□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3,748
암환자지원사업 (재가암환자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 재가암환자 의료지원품구입 · 특수영양식이 : 39,300원 × 15명 × 4회 = 2,358 · 영양제 : 6,500원 × 40명 × 4회 = 1,040 · 기저귀 등 : 35,000원 × 10명 = 350	3,74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03. : 사업계획서 수립
- 2022.01. ~ 2022.12. : 재가암환자 발견 및 등록, 방문서비스 제공
- 2022.03. ~ 2022.06. : 분기별 암환자 의료지원물품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재가암환자 등록자수 및 서비스 건 : 225명/417건	19.9.23~
2020년	재가암환자 등록자수, 서비스 건(의료용품 지급) : 208명/1,329건(285건)	
2021년	재가암환자 등록자수, 방문서비스 건(의료용품 지급) : 211명/535건(245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748	3,745		3	
2021년	3,748	3,747		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방문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6급 고종중	전화	4191
-----	-------	------------	-----	----------	----	------